

성평등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정책 조례·지침 개선방안

책임연구원: 나성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기지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서울시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목표를 수립하고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여성의 현실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환경변화를 담아내는 틀로 법령이 기능하도록 현행 여성 및 가족 분야 조례·시행규칙과 관련 지침의 성 불평등한 요소를 점검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주류화, 성평등노동, 여성안전과 권익, 보육 및 아이돌봄, 가족, 외국인·다문화 분야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조례의 성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법령에 반영됨으로써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정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법령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주신 분야별 전문가들, 그리고 서울시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를 위해 제언해주신 서울시 담당자들과 연구진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서울시 정책의 성평등성을 제고하는 데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7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Contents

I 서론_0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8

II 서울시 성평등 분야 정책과 조례 현황 _ 15

1. 성주류화 분야	17
1) 서울시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17
2) 서울시 성인지 강화 정책 추진현황	20
3) 성평등정책 관련 조례 현황 및 분석	22
2. 성평등 노동 분야	32
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32
2)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현황	34
3) 성평등 노동 관련 조례 현황 및 분석	36
3. 여성안전과 권익 분야	42
1) 서울시 여성안전 관련 현황	42
2) 서울시 여성안전 및 권익정책 추진현황	45
3) 여성안전과 권익 관련 조례 현황 및 분석	49
4. 소결	57

Ⅲ 서울시 가족·돌봄 분야 정책과 조례 현황 _ 61

- 1. 보육 및 아이돌봄 분야 63
 - 1) 서울시 아동 돌봄 관련 현황 63
 - 2) 서울시 보육 및 아이돌봄정책 추진현황 69
 - 3) 아동 돌봄 관련 조례 현황 및 분석 76
- 2. 가족 분야 86
 - 1) 서울시 가족 관련 현황 86
 - 2)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현황 92
 - 3) 가족 관련 조례 현황 및 분석 96
- 3. 외국인·다문화 분야 114
 - 1)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관련 현황 114
 - 2)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추진현황 117
 - 3)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황 및 분석 120
- 4. 소결 123

Ⅳ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 개정방안 _ 125

- 1.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 개정방향 127
- 2.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 개정안 129
 - 1)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 129
 - 2) 여성의 현재적 상황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 지원 추진 137
 - 3) 여성의 안전과 권익 보장 강화 138
 - 4) 성평등한 가족 및 돌봄 가치 추구 141
- 3. 시정의 성평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150

참고문헌 _ 152

Abstract_ 154

표 목차

표 I-1	서울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근거	4
표 I-2	서울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2012-2018년)	5
표 I-3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작성 제외 기준	6
표 I-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9
표 I-5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조례·시행규칙 현황	10
표 I-6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지표	12
표 I-7	전문가조사 개요	13
표 II-1	서울시민의 사회적 차별 요인에 대한 인식(2017년)	18
표 II-2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사회정의에 대한 공평 정도	18
표 II-3	성주류화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20
표 II-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주요 내용	23
표 II-5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주요 내용	28
표 II-6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주요 내용	29
표 II-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31
표 II-8	최근 5년간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고용 현황	32
표 II-9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비율	33
표 II-10	성평등 노동정책 및 여성일자리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34
표 II-1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36
표 II-1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주요 내용	39
표 II-13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주요 내용	40
표 II-14	지난 10년 간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변화(2008-2017년)	43
표 II-15	서울시 성폭력 발생현황 추이	44
표 II-16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추이	44
표 II-17	서울시 안전 분야 정책적 특징 및 한계	45
표 II-18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사업현황(2018년)	46
표 II-19	여성안전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47
표 II-20	여성권의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48
표 II-2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50
표 II-22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주요 내용	53

Table Contents

【표 II-23】 「서울특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주요 내용	54
【표 II-24】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주요 내용 ..	56
【표 II-25】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	57
【표 III-1】 유자녀여성의 취업 중단 사유(2015년)	63
【표 III-2】 서울시 2세대 신혼부부가구 자녀 보육 현황(2015-2017년)	64
【표 III-3】 서울시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2017년)	65
【표 III-4】 서울시 보육시설별 이용 만족도(2017년)	66
【표 III-5】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2018년)	66
【표 III-6】 성인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2017년)	67
【표 III-7】 서울시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 및 돌보미 수 추이(2012-2017년)	68
【표 III-8】 서울시 시간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18년)	68
【표 III-9】 보육 분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69
【표 III-10】 보육 분야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70
【표 III-11】 보육 분야 민간어린이집 운영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71
【표 III-12】 보육 분야 맞춤형보육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72
【표 III-13】 아이돌봄 분야 초등돌봄체계 구축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73
【표 III-14】 아이돌봄 분야 종사자 근로환경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74
【표 III-15】 아이돌봄 분야 가정양육 부담 완화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75
【표 III-16】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주요 내용	77
【표 III-17】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주요 내용	80
【표 III-18】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82
【표 III-19】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84
【표 III-20】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85
【표 III-21】 서울시 1인 가구의 연령별 현황(2017년)	88
【표 III-22】 서울시 여성가구가 추이(2005-2015년)	89
【표 III-23】 서울시 한부모가구 현황(혼인상태별, 2005-2015년)	89
【표 III-24】 가족 분야 다양한 가족 지원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92
【표 III-25】 가족 분야 가족·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	93
【표 III-26】 가족 분야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	94
【표 III-27】 가족 분야 아동중심 보호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95
【표 III-28】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주요 내용	97
【표 III-29】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99
【표 III-30】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주요 내용 ..	101

Table Contents

표 III-3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102
표 III-32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105
표 III-33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106
표 III-34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07
표 III-35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109
표 III-36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110
표 III-37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111
표 III-38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112
표 III-39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113
표 III-40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2017)	114
표 III-41	서울시 외국인주민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유형(2017년)	115
표 III-42	서울시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 분포현황(2017년)	116
표 III-43	서울시 다문화가구 가구원 현황(2017년)	116
표 III-44	서울시 다문화가구 가구원 상위 자치구(2017년)	117
표 III-45	내·외국인 교류 강화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118
표 III-46	외국인주민 자립역량 강화 지원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119
표 III-47	문화다양성 수용 및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120
표 III-48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주요 내용	121
표 IV-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130
표 IV-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31
표 IV-3	의사결정에서의 성별 균형참여를 위한 조례 개정안	132
표 IV-4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구축 관련 조례 개정안	136
표 IV-5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	137
표 IV-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38
표 IV-7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39
표 IV-8	성평등한 가족정책 추진 관련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141
표 IV-9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	142
표 IV-10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개정안	143
표 IV-11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44
표 IV-12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44
표 IV-1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46
표 IV-14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49

그림 목차

Ⅰ 그림 Ⅰ-1 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조직도	8
Ⅰ 그림 Ⅰ-2 Ⅰ	연구수행 체계	14
Ⅱ 그림 Ⅱ-1 Ⅰ	서울시민의 성평등 수준(상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19
Ⅱ 그림 Ⅱ-2 Ⅰ	서울시 성별 임금격차 추이	33
Ⅱ 그림 Ⅱ-3 Ⅰ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발생비 추이(전국, 2008-2017년)	42
Ⅱ 그림 Ⅱ-4 Ⅰ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연령분포(2017년)	43
Ⅲ 그림 Ⅲ-1 Ⅰ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규모(2017년)	87
Ⅲ 그림 Ⅲ-2 Ⅰ	서울시 가구원수별 장래가구 수 추이(2015-2040년)	87
Ⅲ 그림 Ⅲ-3 Ⅰ	서울시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추이(2005-2015년)	90
Ⅲ 그림 Ⅲ-4 Ⅰ	서울시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수급지원 유형(2015년)	90
Ⅲ 그림 Ⅲ-5 Ⅰ	서울시 합계출산율 추이(2007-2017년)	91
Ⅲ 그림 Ⅲ-6 Ⅰ	서울시 맞벌이 가구 추이(2013-2017년)	91

연구요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서울시는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성주류화 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 젠더업무담당자 지정·운영, 젠더자문관 운영근거 법제화 등 조직 및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정책심분야 중심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투자출연기관까지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런데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여성가족 분야의 조례·지침이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여성’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이유로 성분석에서 일괄 제외됨으로써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새로운 정책 환경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제도 추진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불평등한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짐. 특히 “성평등 서울 추진 계획”에서 초점을 둔 경제, 안전, 성평등 분야, 그리고 가족 및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과 쟁점을 정리하고, 분야별 젠더 이슈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서울시의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내용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자치법규(조례 28개, 시행규칙 2개)이며, 해당 조례 분석은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지표를 참조하여 성별 고정관념이 표현된 사항은 없는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지, 성별분리통계를 명시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였음.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할 조항들과,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보완되어야 할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

-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써, 제도 추진 및 성인지 분석 선행연구, 분야별 정책보고서, 시정자료, 사업 운영지침, 광역시·도 법령 및 자치구 조례, 입법 예고 개정안 등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쟁점사항을 보완하였음.
- I 장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연구 수행 체계를 제시함.
- II 장에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 중 성평등 분야를 대상으로 성 주류화, 성평등 노동, 여성안전 및 권익 등 3개 분야로 범주화하여 젠더 이슈 및 추진 정책을 검토하고 근거 조례를 분석함.
- III 장에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 중 보육 및 아이돌봄, 가족, 외국인·다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각각의 젠더 이슈 및 정책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분석함.
- IV 장에서는 II 장과 III 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의 개정 방향과 중점 분석 대상이 된 조례별 개정안을 제시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함.

□ 연구 결과

(1) 성주류화 분야

- 서울시에서 시정의 성인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성주류화 제도를 도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성평등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중앙정부법 및 타 지역 조례에서 적용한 ‘양성평등’ 이 아닌 ‘성평등’ 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성평등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최근 신설됨.
- 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가 완곡하게 제시된 표현을 개선하여 실행력을 담보하고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성평등 노동 분야

-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의 초점은 여성의 취업률 제고와 성별 임금격차 완화에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에 있음.
- 이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구성 등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대조적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돌봄노동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여성일자리기관의 명칭 변경을 통해 여성을 ‘개발’이나 ‘발전’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데에서 진일보함.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에서 ‘경력단절여성’은 상위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한정되어 성별고정관념을 드러냄. 이에 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여성노동의 현실을 담아내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여성안전과 권익 분야

- 서울시는 2013년 ‘여성안심특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7년까지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을 발전시켜오면서 여성범죄에 대한 도시 전체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음. 2018년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발표하여 서울시 조직내부뿐 아니라 시민보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음.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2차 피해방지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 온 만큼, 2차 피해에 관한 사항이 해당 조례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즉, 2차 피해의 정의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할 것임.

(4) 보육 및 아이돌봄 분야

- 서울시는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을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교사 업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둔 보육정책을 추진해 옴. 또한 2018년 11월에 아이돌봄정책 추진부서(아이돌봄담당관)를 신설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보미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는 정책대상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방과후 보육’ 대상으로 한정된 ‘맞벌이 부부’,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은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돌봄의 수혜자뿐 아니라 돌봄노동 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가족 분야

- 2017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한부모가구 증가(2005년 8.64% → 2015년 9.93%), 1인가구 증가(2015년 20.4% → 2040년 36.3% 추정) 등의 특징을 나타냄. 서울시에서는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2019~2022)」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다양한 가족 지원, 가족·양육 친화환경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중심 보호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추진 중임.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가족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상황, 혼인여부 또는 이와 관련된 임신과 출산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생활안정’ 보다 ‘자립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함. 또한 미혼모·부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낮은 출산율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감안하여 ‘저출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시 출생인구 감소 경향을 염두에 두고 ‘다자녀가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확대 발급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넓힐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는 정책 용어와 일치시켜 ‘출산축하용품’은 ‘출생축하용품’으로, ‘일·가정 양립’은 ‘일·생활 균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6) 외국인·다문화 분야

- 서울시는 2014년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 인권가치의 확산, 문화다양성, 성장과 공유,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성별, 연령, 국적취득 여부, 체류기간 등에 따른 상이한 정책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의회 구성 시 성별에 따른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실시 시 연령, 혼인 상태, 취업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성별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및 향후 과제

-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첫째, 서울시 정책의 성인지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의 성별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결정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평등 추진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의 책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균등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둘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특정한 가족형태 및 조건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여성의 현재적 상황과 정책 요구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는 것이어야 함. 그리고 경제·노동 분야에서의 성평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된 조례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일하는 여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셋째,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를 담아내는 성평등한 가족정책의 추진 근거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서울시 가족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추진 근거로서 ‘가족지원 기본조례’ 제정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개정방향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조례별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

【 표 1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1조외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p>	<p>제1조외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p>
<p>제14조(적극적 조치) 시장·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4조(적극적 조치) 시장·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이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u></p>
<p>제19조외2(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9조외2(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u>실시하여야 한다.</u></p>

현행 법령	개정안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u>서울성평등백서</u> 를 발간하여야 한다.

【 표 2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u>성평등</u> 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2.~9. 생략 10.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u>성평등</u> ·가족·보육·저출생,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2.~9. 생략 10.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u>성평등</u> ·가족·보육·저출생,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표 3 | 의사결정에서의 성별 균형참여를 위한 조례 개정안

조례명	현행 법령	개정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p>제7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생략</p>	<p>제7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u>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15조에 따른다.</u></p> <p>④ 생략</p>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p>제4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7. 생략</p> <p>③~④ 생략</p>	<p>제4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7. 생략</p> <p>③~④ 생략</p>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 라 운영에 관한 조례	<p>제22조(서울상상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출산육아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③~④ 생략</p> <p>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⑥ 생략</p>	<p>제22조(서울상상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가족정책실장과 <u>보육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p> <p>③~④ 생략</p> <p>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p>

조례명	현행 법령	개정안
		<p>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⑦ 생략</p>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p>제13조(운영위원회) ① 생략</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③ 생략</p>	<p>제13조(운영위원회) ① 생략</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p>제12조(운영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제12조(운영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p>

조례명	현행 법령	개정안
		<p>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2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p>	<p>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⑥ 생략</p>	<p>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⑦ 생략</p>

【 표 4 】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구축** 관련 조례 개정안

조례명	현행 법령	개정안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실태조사는 <u>성별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하며, 연령, 혼인상태, 취업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특성에 따른 성별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u></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p>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p> <p>② 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p> <p>② 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u>연령, 취업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특성에 따른 성별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u></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외국인주 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p>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조례명	현행 법령	개정안
	<p>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u>실태조사는 성별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하며, 연령, 혼인상태, 취업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특성에 따른 성별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u></p> <p>④~⑤ 생략</p>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표 5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p> <p>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p> <p>3. “주부인턴십 프로그램”이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응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직장체험 활동을 말한다.</p> <p>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u>현재 경제활동 중단 상태에 있으면서</u>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p> <p>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p> <p>3. <u>삭제</u></p> <p>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p> <p>2. 직업교육훈련 실시</p>	<p>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p> <p>2. 직업교육훈련 실시</p>

현행 법령	개정안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주부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6.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삭제 5. 삭제 6.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

표 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신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여성의 안전과 권익 보장 강화

표 7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피해자”라 함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피해자”라 함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6.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현행 법령	개정안
	<p>를 포함한다)</p> <p>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p>제2장 지역연대의 설치·운영</p> <p>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6조(지역연대의 구성)</p> <p>제7조(지역연대의 기능)</p>	<p>제2장 서울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운영</p> <p>제5조(서울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의 서울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둔다.</p> <p>제6조(서울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p> <p>제7조(서울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p>

현행 법령	개정안
<p>제14조(여성폭력 실태조사)</p> <p>①~② 생략</p> <p>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발생유형·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지역 연대에 보고를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p>	<p>제14조(여성폭력 실태조사)</p> <p>①~② 생략</p> <p>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u>국적·장애 여부·성 정체성</u>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발생유형·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u>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u>에 보고를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p>
<p>[신설]</p>	<p>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성평등한 가족 및 돌봄 가치 추구

▣ 표 8 ▣ 성평등한 가족정책 추진 관련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p>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u>일·생활 균형</u>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현행 법령	개정안
<p>친화제도의 확산</p> <p>8.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p> <p>9.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친화제도의 확산</p> <p>8.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p> <p>9. 그 밖에 <u>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u> 필요한 사항</p>
<p>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외국인주민 및 <u>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가</u>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 표 9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 포함)·혈연·입양 등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p> <p>②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p> <p>③ ‘1인 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p> <p>④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p>
<p>[신설]</p>	<p>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건강가정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표 10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5. 생략</p> <p>6. “방과 후 보육”이란 <u>맞벌이</u>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5. 생략</p> <p>6. “방과 후 보육”이란 <u>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u>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4조(교육)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4조(교육)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과 <u>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u>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표 11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략</p> <p>4.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략</p> <p>4.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u>어린이 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u>를 말한다.</p>

【 표 12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생략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 6.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p>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생략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지원 사업 6.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 사업 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8.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 9.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p>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생략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생략 	<p>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생략 6. 한부모가족 <u>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u> 7. 생략
<p>[신설]</p>	<p>제16조(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① 미혼모·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거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혼모·부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2. 출산비, 아이 입원 등 병원비, 생필품 구입비 등 경제적 지원

현행 법령	개정안
	3.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 4. 미혼모·부 가족의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양육 미혼모·부의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6. 유관기관·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미혼모·부 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1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p> <p>2.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p> <p>3.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p> <p>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다만, 막내가 13세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p> <p>5. “출산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p> <p>6~8.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p> <p>2.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p> <p>3. “저출생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p> <p>4. “(자녀)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족 중 막내자녀가 13세 이하인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p> <p>5. “출생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p> <p>6~8. 생략</p>
<p>제4조의2(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p>

현행 법령	개정안
<p>②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p> <p>③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p> <p>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p>⑤ 시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p>② 출생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p> <p>③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p> <p>④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생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p>⑤ 시장은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현행 법령	개정안
<p>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p> <p>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p> <p>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p>⑧ 시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p>	<p>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p> <p>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u>출생축하용품</u>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u>출생축하용품</u>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p> <p>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u>출생축하용품</u>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u>출생축하용품</u>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출생축하용품</u>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u>출생축하용품</u>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u>출생축하용품</u>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p>⑧ 시장은 <u>출생축하용품</u>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p>
<p>제6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시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p>1~3. 생략</p>	<p>제6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시민이 <u>일·삶·덤</u>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p>1~3. 생략</p>
<p>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전과 방향 2. 추진과제와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필요한 사항 <p>③ 생략</p>	<p>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 특성에 맞는 <u>저출생</u>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저출생</u> 대응 정책의 비전과 방향 2. 추진과제와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u>저출생</u> 대응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필요한 사항 <p>③ 생략</p>

【 표 14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u>일과 생활의 균형</u>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u>성평등한 사회 발전</u>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4. 생략 5.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노동자를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u>일·삶·쉽</u>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u>일·삶·쉽</u>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4. 생략 5. <u>삭제</u>
<p>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u>성평등하고</u>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향후 서울시 정책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운영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서울시 여성 및 가족 분야의 변화하는 정책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넘어서는 규정 마련을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임. 또한 여성가족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인적대상 사업 관련 조례의 성 불평등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마련된 성별영향평가 실시 과정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정 조직, 제도, 정책 등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MeToo’ 운동 등으로 인해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졌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는 성평등한 고용 및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저출생·고령화 경향 지속 등 가족구성을 둘러싼 변화 역시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여건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는 ‘여성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완성’을 목표로 ‘시대를 선도하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안전, 성평등 분야의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다.¹⁾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주류화 전략²⁾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부서별 젠더업무담당자 지정·운영, 젠더자문관 운영근거 법제화³⁾ 등 조직 및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정핵심 분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

1) 「3·8 성평등 서울 추진계획」(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4843호, 2019.3.27.)

2) 성주류화는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채택되었으며, 북경행동강령은 성주류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한정원 외, 2008: 4).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젠더자문관 운영 등) [본조신설 2017. 9. 21.]

으며, 투자출연기관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성주류화 제도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⁴⁾ 한국사회에 성주류화가 본격 도입된 것은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추진근거가 마련되면서부터이며, 서울시에서는 2003년 복지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심층평가 형태로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후 2011년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⁵⁾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추진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었는데, 특히 분석평가 대상에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이 포함됨으로써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다.⁶⁾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기존 법령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성차별적인 법령이 입법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의 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2019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 표 I - 1 】 서울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근거

근거법	내 용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p>제35조(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8.></p> <p>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7. 18.></p> <p>③~⑤ 삭제</p>

4)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6639호, 2017.4.3); 「2019년 주요업무보고」(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제285회 시의회 보고자료, 2019.2.).

5) 제정 당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 2011.9.15., 시행 2012.3.16.)이었다가 2018년에 제명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수정하였다(개정 2018.3.27., 시행 2018.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6)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법	내 용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심사 2. 입법예고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분석평가 5~8. 생략

* 주: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관한 사항은 본문에서 별도로 논의할 예정임.

* 출처: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검색일: 2019.7.29.)

관련법 및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의 제·개정 시에 이루어지는데, 서울시에서는 2012년 126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I - 2 】 서울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2012-2018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과제 수	126	115	125	155	140	123	142

* 출처: 각 년도 「서울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은 원칙적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제·개정되는 법령안 전체가 다음의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법령을 살펴보면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기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대통령 긴급명령 관련, 행정절차나 소송 및 재판, 문구의 단순 변경 등이 포함되며, 이 중에는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3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작성 제외 기준

선정 기준	
작성 제외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 물품,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성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조항 등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법령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출처: 「2019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여성가족부, 2019), 20쪽.

성별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사업 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있다.⁷⁾ 이러한 기준은 이미 개념적으로 여성친화적 지향을 담고 있다고 간주되는 정책이나 수혜집단에서 이미 여성 비율이 높은 경우 성평등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데 기인한다(김경희 외, 2015). 그러나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여성가족 분야의 조례·지침이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여성’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이유로 성분석에서 일괄 제외됨으로써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새로운 정책 환경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제도 추진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7)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4. (생략)

서울시 사례는 아니지만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성과 가족을 출산 주체가 아닌 정책적 개입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역풍을 맞았던 전례가 있으며,⁸⁾ 성평등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정재훈 외, 2017)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으로 상정하고 결혼이민자여성들을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간주한다거나(김선희 외, 2008; 장은정, 2013),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국적과 혈통 중심의 자문화중심주의를 견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장선희, 2010; 김도희 외, 2016)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를 담아내는 틀로서 조례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라 하더라도 현재적 시점에서 성평등한 정책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지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체계 마련의 근거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개정을 추진⁹⁾하게 된 것은, 노동의 성 불평등에 대한 공감대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된 데 기반을 둔다. 마찬가지로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정책은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를 담아내는 근거 법령에 기반을 둘 때 실효성이 강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 분야 조례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불평등한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성평등 서울 추진 계획”에서 초점을 둔 경제, 안전, 성평등 분야, 그리고 가족 및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현황과 쟁점을 정리하고, 분야별 젠더 이슈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서울시의 성평등한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8)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비판 쏟아진 이유”(「한겨레」, 2016년 12월 29일자); “‘대한민국 출산지도’, 여성 비하 논란 확산되자 사과문 게재”(「서울신문」, 2016년 12월 30일자).

9)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562호,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2019.3.29.)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관련 조례들이 최근의 젠더 이슈를 적절히 담아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분석대상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지침이 되며,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조례를 분석하였다.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실은 6개 담당관,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2019.1.9. 기준).¹⁰⁾ 2018년 10월까지 4개 담당관 22팀이었다가 11월 1일자로 5개 담당관 26개 팀으로 개편되면서 아이돌봄담당관이 신설되었고, 2019년 1월 1일자로 여성권익담당관이 신설되면서 6개 담당관 26개 팀으로 개편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¹¹⁾



■ 그림 I-1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조직도

*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2019.4.1.기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가족·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 ‘아이돌봄 걱정없는 서울’, ‘가족과

10) 본청 소속 6개 담당관 외에 1개 사업소(아동복지센터), 1개 출연기관(여성가족재단)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2.)

11) “여성가족정책실 조직개편(’18.11.1.字) 알림”(여성정책담당관-19141호, 2018.11.01.); “여성가족정책실 조직개편(’19.1.1.字) 알림”(여성정책담당관-23468호, 2018.12.31.).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등 4개 세부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6개 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I-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여성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 개발, 성평등 문화조성 및 기반 마련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 일자리 지원,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 여성단체 교류 협력, 여성안심 정책개발 및 추진
여성권익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 대책 수립·추진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취약여성 보호 및 지원 십대여성 안전 및 건강 지원, 비상용 생리대 지원
보육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어린이집 등 믿고 맡기는 보육 인프라 구축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 어린이집 지원 안심보육 환경조성
가족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정책 개발, 1인 가구 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복지 사업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저출생 대응계획 수립 및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
아이돌봄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정책 개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우리동네키움센터 열린육아방 설치, 아이돌보미 등 돌봄사업 아이돌봄 협력사업 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생활 정착 및 자립 지원 다문화 수용성 향상 등 건강한 다문화 사회 분위기 조성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4쪽.

이상의 업무를 추진하는 근거인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자치법규는 28개 조례, 2개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2019.8.1. 기준).¹²⁾ 중앙행정기관과 업무 추진체계를 비교하면,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속하는 청소년 분야¹³⁾의 경우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 정책과에 속해 있으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보육담당관 업무는 보건복지부 업무와

12) 서울시 자치법규는 조례 642건, 시행규칙 228건, 훈령 29건, 예규 10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령과 예규의 경우 여성가족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출처: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검색일: 2019.8.1.)

13)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이 해당된다.

연계된다.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의 각 조례·시행규칙과 연관된 부서현황을 보면 여성정책담당관 10개(시행규칙 2개 포함), 여성권익담당관 2개, 보육담당관 3개, 가족담당관 12개, 아이돌봄담당관 2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개 조례가 해당되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I -5 】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조례·시행규칙 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	최근 개정일	관련 부서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1999.7.31.	2019.7.18.	여성정책담당관 젠더정책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2000.10.10.	2017.10.12.	여성단체협력팀, 성평등노동팀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0.7.25.	2019.5.2.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0.9.15.	2018.10.18.	여성정책기획팀, 여성일자리팀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1.9.29.	2018.1.4.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4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2012.7.30.	2019.3.28.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5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2013.10.4.	2017.1.5.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
6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2013.8.1.	2019.7.18.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
7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2019.1.3.	2019.1.3.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안심사업팀
8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2019.7.18.	-	여성정책담당관 젠더정책팀
9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5.26.	2017.1.5.	여성권익담당관 여성복지팀
10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2018.5.3.	2018.5.3.	여성권익담당관 늘푸른여성팀
1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1999.5.10.	2019.3.28.	보육담당관 공보육운영팀, 보육사업팀, 보육지원팀
12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2012.12.31.	2019.7.18.	보육담당관 공보육기반팀

연번	조례명	제정일	최근 개정일	관련 부서
13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2013.3.28.	2019.5.2.	보육담당관 보육사업팀
14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2007.1.2.	2019.3.28.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15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7.12.26.	2017.1.5.	가족담당관 가족문화팀
16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0.1.7.	2017.5.18.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1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1.7.28.	2018.5.3.	가족담당관 가족문화팀
18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9.29.	2015.10.8.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19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5.22.	2019.7.18.	가족담당관 가족문화팀
20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13.8.1.	-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21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0.4.	2018.5.3.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22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10.4.	2017.1.5.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23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2016.3.24.	2019.5.16.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2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2016.3.24.	2019.3.28.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25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7.1.5.	2019.3.28.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26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2011.7.28.	2015.10.8.	아이돌봄담당관 아이돌봄정책팀
27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3.	2019.7.18.	아이돌봄담당관 아이돌봄정책팀
28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4.7.17.	2019.3.28.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 다문화가족팀

* 주: 소관부서별, 제정시기별로 정렬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7.20.기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해당 조례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참조하였다. 성별영향평가는 성주류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마경희, 2007)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김경희 외, 2015) 법령에 대한 성인지 분석에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분석틀로 참조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 지표는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② 성별 특성, ③ 성별 균형 참여, ④ 성별 통계 등 4개 항목, 7개 점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하단 표 참조).

【표 I-6】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지표

평가 항목	점검 point
I.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예: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과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을 다르게 판정하는 규정이나 혼·포장 수여 시 남성과 여성의 혼장 크기를 달리하는 규정 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으로 상시여성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반영 1-3. 법령 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면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여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
II. 성별 특성	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II.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 항목	점검 point
IV.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 출처: 『2019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여성가족부, 2019), 22쪽.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의 조례 28개와 시행규칙 2개에서 성별 고정관념이 표현된 사항은 없는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지, 성별분리통계를 명시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할 조항들과,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보완되어야 할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선안 도출에 참조하고자 해당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야별 젠더 이슈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책 추진의 배경이 되는 여성과 가족 분야 현황 점검, 정책 추진사항 검토, 조례의 성인지성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시행규칙의 성인지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성주류화 제도 추진 및 성인지 분석 관련 선행연구, 여성 및 가족 분야 정책 보고서, 서울시 정책자료 및 주요사업의 운영지침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조례와 연관된 중앙정부법 및 관련 사업, 16개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 25개 서울시 자치구 관련 조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입법예고된 개정안 검토 및 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쟁점사항을 보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면접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해 분야별 현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개선과제 도출에 활용하였다.

【표 I-7】 전문가조사 개요

분야	주요내용
젠더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안전 및 권익정책 평가 • 중앙정부법과의 관계 • 2차피해 명시 관련 의견

분야	주요내용
성평등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평가 중앙정부법과의 관계, 서울시 조례 특수성 등
가족·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지원 기본조례 필요성, 상위법과의 관계 등 도출된 개선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이상에서 밝힌 연구 주요내용과 방법에 따른 연구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주요내용			
1단계	연구 기획 및 착수	시행계획서 제출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 등 계획 수립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도출
		정책현황 검토	- 여성가족분야 조례 현황 파악 - 법령의 젠더 분석 관련 기존논의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착수자문회의	- 내·외부 전문가, 서울시 담당자 등 - 연구방향,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자문	
		착수결과보고 및 착수보고서 제출		
2단계	조사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조례 분석	- 성평등 패러다임 반영 여부 검토 - 성별영향평가 분석지표 적용 분석 - 중앙정부법 및 타 지역 조례 비교 검토	조례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모색
		관계자 면접	- 여성가족분야 젠더 이슈, 개선안 관련 의 견 조사	
		중간심의 및 결과 반영		
3단계	정책 방안 도출	전문가 자문	- 개선안 및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 수렴	성평등 개선방안 제시
		개선안 도출	- 성평등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분야 조례 및 지침의 개선방안 제안	
4단계	최종 보고	최종심의 및 연구보고서 발간		

┃ 그림 I-2 ┃ 연구수행 체계

Ⅲ

서울시 성평등 분야 정책과 조례 현황

1. 성주류화 분야
2. 성평등 노동 분야
3. 여성안전과 권익 분야
4. 소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서울시 성평등 분야 정책과 조례 현황

1. 성주류화 분야

1) 서울시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서울시는 지난 민선 5기부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서울시 조례에서 정의하는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¹⁴⁾ 따라서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차별요인에 대한 인식 결과를 살펴본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성별에 따른 차별보다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외모, 나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대에 상관없이 소득수준에 대한 차별 정도를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단, 성별과 관련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인식하는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2.9%p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⁵⁾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성별을 사회적 차별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13.7%),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의2(정의) 참조

15) $p < .000$, 「2017년 서울서베이」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표Ⅱ-1】 서울시민의 사회적 차별 요인에 대한 인식(2017년)

(단위: %)

구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직업	외모	나이	성별	국적	출신 지역	종교	
전체	51.8	43.6	40.0	20.7	14.3	12.9	10.7	4.5	1.1	
성별	여성	51.0	43.1	38.7	21.9	14.6	14.3	10.4	4.4	1.1
	남성	52.6	44.2	41.3	19.4	14.0	11.4	10.9	4.7	1.1
연령별	10대	47.8	47.0	37.7	27.1	12.7	13.1	9.3	3.7	1.0
	20대	48.7	44.4	39.0	25.4	11.4	13.7	11.8	3.8	1.2
	30대	51.8	43.6	42.3	21.1	11.9	13.0	11.5	3.7	0.9
	40대	52.4	43.5	40.4	30.5	13.7	12.4	10.6	4.8	1.1
	50대	54.0	43.7	40.3	19.0	14.1	12.2	11.0	4.4	1.1
	60대이상	52.8	42.2	38.8	16.9	19.3	13.1	9.4	5.8	1.3

* 주: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사회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차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까?” 문항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결과임.

* 출처: 「2017 서울서베이」

또한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사회정의에 대한 공평 정도를 살펴본 결과, 성평등에 대한 공평성의 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 모두 성평등에 대한 공평성은 4.77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수입과 소득, 취업기회, 소수자 권리의 순으로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평등의 공평성에 대한 인지 정도는 성별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2015년 0.07, 2016년 0.09) 연령대별로도 특정한 경향을 띠지 않는다. 단, 30대의 경우 공평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Ⅱ-2】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사회정의에 대한 공평 정도

(단위: 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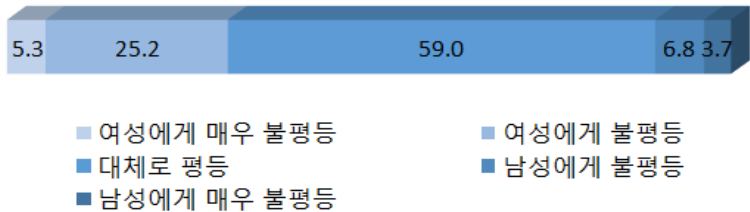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종합	남녀 평등	수입과 소득	취업 기회	사회 복지	소수자 권리	종합	남녀 평등	수입과 소득	취업 기회	사회 복지	소수자 권리	
전체	4.51	4.77	4.39	4.34	4.68	3.97	4.51	4.77	4.40	4.33	4.71	3.95	
성별	여성	4.54	4.74	4.46	4.37	4.73	3.98	4.53	4.73	4.43	4.36	4.73	3.94
	남성	4.48	4.81	4.33	4.31	4.64	3.97	4.49	4.82	4.37	4.29	4.69	3.96

구분	2015						2016						
	종합	남녀 평등	수입과 소득	취업 기회	사회 복지	소수자 권리	종합	남녀 평등	수입과 소득	취업 기회	사회 복지	소수자 권리	
연령대	10대	4.52	4.75	4.33	4.22	4.79	3.9	4.51	4.69	4.42	4.30	4.74	3.90
	20대	4.49	4.74	4.32	4.27	4.66	3.96	4.5	4.75	4.38	4.17	4.77	3.91
	30대	4.42	4.67	4.31	4.29	4.61	3.91	4.43	4.68	4.34	4.3	4.61	3.84
	40대	4.48	4.77	4.44	4.3	4.67	3.88	4.49	4.77	4.38	4.31	4.67	3.92
	50대	4.53	4.81	4.39	4.38	4.70	4.00	4.54	4.79	4.40	4.38	4.76	4.00
	60대이상	4.62	4.87	4.51	4.49	4.74	4.12	4.6	4.89	4.46	4.43	4.73	4.07
지역별	도심권	4.67	4.92	4.60	4.44	4.90	4.17	4.58	4.78	4.49	4.5	4.78	4.25
	동북권	4.46	4.78	4.36	4.3	4.63	3.95	4.57	4.84	4.48	4.37	4.77	4.04
	서북권	4.30	4.57	4.22	4.02	4.43	3.87	4.37	4.66	4.29	4.15	4.60	3.88
	서남권	4.58	4.81	4.43	4.47	4.74	3.92	4.43	4.71	4.32	4.20	4.60	3.86
	동남권	4.56	4.79	4.44	4.38	4.77	4.11	4.62	4.83	4.43	4.50	4.82	3.92

* 주: “귀하께서는 각 항목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출처: 「2015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 「2016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한편, 서울시민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젠더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참조하였다(나성은 외, 2018: 48). 결과를 보면 ‘대체로 평등’ 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9.0%로 압도적으로 높다. ‘여성에게 불평등’ (25.2%)하거나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5.3%)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0.8%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성에게 불평등’ 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 (남성에게 불평등 6.8%,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 서울시민의 성평등 수준(상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도 소득, 직업과 별개의 항목으로 성별이 조사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의 정의에서 전제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은 수입과 소득, 취업기회, 사회복지, 소수자 권리 등의 요인을 관통하는 요인이므로, 별도로 존재하는 ‘성평등’ 요인이 여성과 남성이 처한 차별적 현실을 대표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2) 서울시 성인지 강화 정책 추진현황

서울시에서는 2017년 3월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목표로 ①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조직·법제적 기반 강화, ② 성인지 정책 추진체계 정비, ③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교육·네트워크 강화를 3대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2019년 서울시 성주류화 정책은 성주류화와 관련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¹⁶⁾ 또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성평등정책 추진도구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표Ⅱ-3 | 성주류화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시정 전반 성주류화를 위한 성인지 정책도구 내실화	성별영향평가 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반 및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조례’ 제정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19년 하반기) • 시 주요사업 심층평가를 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대면컨설팅 확대 • ’19년부터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성별영향평가 실적 반영

16)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항이 개정될 예정이다.

목표	내용	추진계획
	성별분리통계 관리 강화 및 서울시 성인지 통계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통계 274개 중 성별 미분리 통계(66개) 관리 강화 및 소관부서 컨설팅 실시 •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서울시 성인지 통계집 발간(* 19.12월)
	젠더자문관 자문기능 강화 및 젠더업무담당자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장 이상 방침 협조 결재 및 외부기관 등과 연계한 성평등정책 발굴 협력 • 시, 투자·출연기관 젠더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인지 교육·네트워크 강화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내기 공무원, 관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등 직무교육 및 대규모 집합교육 병행
	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류화 정책 실천 및 성희롱 예방 우수부서(3개) 선정, 포상 및 결과 공유
	성인지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한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활동가 양성(200명), 시·구 주요사업 성인지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안 도출
학교와 일상에서의 성평등 문화확산	청소년의 성평등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내 성평등 교육 실시(3만명), 성평등 공모전 개최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지원 확대 및 성건강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여성 이용 공공시설: 11개소('18년) → 200개소('19년) • 성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생리대는 인권입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8쪽.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시정의 성인지 강화를 위해 젠더자문관 도입, 투자출연기관으로 성별영향평가 확대 실시, 사업계획의 사전검토항목에 성별분리통계 산출여부 추가 등 다양한 성주류화 제도를 도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사회 영역과의 협치 강화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젠더거버넌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평등정책 성과 공유 및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3) 성평등정책 관련 조례 현황 및 분석

서울시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조례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성평등정책 추진의 실행력 제고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해당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1995.12.30.)됨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1999.7.31.)에 기반을 두며,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앞서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2012.7.30.)했다는 특징이 있다.¹⁷⁾

지금까지 24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행 조례는 성평등의 개념 정의 등의 규정(제1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체계 규정(제2장), 젠더자문관 운영 근거의 법제화 등을 포함한 성평등정책 촉진 정책 규정(제3장),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등의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규정(제4장), 성평등 기금 존속 기한의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평등 기금 규정(제5장),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운영 규정(제6장),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제7장),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제8장), 보칙(제9장)을 포함하여 총 9장 59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7)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5월 28일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해당 법률안은 신경림의원과 김상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및 김광진의원 대표발의)을 여성가족위원회(4월)에서 함께 심사하여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출처: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4.05.07일자).

【표 II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9장 59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성평등 촉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적 사항 규정	
	제1조의2(정의)	성평등, 성희롱, 성주류화 정의	
	제2조(시의 책무)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재원 마련과 여성 관련 법령 준수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모든 시민의 정책 수립 및 시행 적극 협력 의무 규정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개정 시 조례 목적에 맞도록 규정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성평등정책 추진 주요 사업 규정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규정		
제7조(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촉직 및 사무 간사 규정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규정(2년, 1회 연임)		
제9조(해촉)	해촉 사유(금고형, 비위사실, 장기간 미출석, 품위손상 등) 규정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위원회 업무 총괄 부위원장: 위원장 보좌 및 직무 대행		
제11조(회의)	연 4회 개최, 회의 소집 통지·개의·의결 기준, 안건 제척 기준		
제12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각 분과위의 소관사항		
제3장 성평등촉진 정책			
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젠더자문관 업무범위 및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1.	
제14조(적극적 조치)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 참여 촉진 등 실질적 성평등 추진을 위한 조치 규정		
제15조(시정참여 확대)	특정성별의 위촉직 초과 금지 권고, 여성공무원 참여(회의·시의회) 확대 의무 규정	개정 2018.3.22.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16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한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제17조(경제활동 참여촉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시장의 시책마련 의무	개정 2019.3.28.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보육의 공공성 확보, 육아휴직제 정착, 일·가족 양립 지원, 가족친화제도 확산,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 등	개정 2019.7.18.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한 시책 마련,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생활 지원	
제19조의2(성인지 교육)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 노력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제20조(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예방조치·관련자 조치 등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장의 의무 규정	
제22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자립 지원 의무와 가해자 교화 시책 마련 등	
제23조(여성의 복지증진)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여성복지 수요 부응하기 위한 정책	
제24조(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설 조성과 개선 시 성평등 관점 반영하여 결과 평가와 개선책 수립	
제25조(여성의 건강 증진)	보건의료서비스의 동등한 접근과 여성의 건강증진 시책 마련 및 지원	
제25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 지원(지원규모, 방법, 종류는 별도 지정)	신설 2018.10.4.
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시민에게 최신의 성평등 정보(수집·축적·관리) 제공 규정	
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정책의 실적 평가 및 공표, 평가결과 경영평가에 반영	
제28조(성평등주간 행사 등)	성평등주간 및 세계여성의 날(3.8) 기념행사 실시와 지원	
제29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성평등 촉진 시설 설치·운영	필요 사항은 별도 조례로 규정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
제3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사업 적극 추진 및 지원	
제32조(국제협력 지원)	여성의 국제 연대와 협력강화 활동 지원	
제33조(시민참여)	성평등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의견제안자 포상	
제34조(유공자 표창)	성평등추진 공헌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 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5조(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 및 제도 추진 사항 규정	
제35조의2(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사항(조례·규칙 및 시 소관정책,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사업) 명시	신설 2017.9.21.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재정운용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방재정법 36조의2, 동법 53조의2
제37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 작성 시 성별 불평등 현상 시정을 위한 통계 산출·보급	
제38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자문 및 위탁 기관 예산 지원, 정책 활동 결과 평가를 시민에게 공표	
제5장 성평등 기금		
제39조(기금의 설치)	기금 설치 필요성과 재원 조성 방안 규정	
제3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 존속기한 명시(~2022.12.31.), 존치 필요한 경우 기한 연장	조례 개정 필요
제40조(기금의 용도)	기금 활용 사업의 유형	
제41조(기금의 관리 운용)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사항	
제41조의2(준용)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제6장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개정 2017. 9. 21.
제42조(설치)	성평등 활동 촉진 목적	
제43조(기능)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프로그램 운영, 단체 설립 상담 등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44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센터 운영 경비와 사업비의 지원, 정산 및 보고 규정	
제7장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개정 2019. 7. 18
제45조(설치 및 기능)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목적	
제46조(지원)	행정 및 경비와 사업비 등 지원	
제47조(지도·점검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제8장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추진체계		신설 2019. 7. 18.
제48조(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목적, 주요사항 등	
제49조(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등	
제50조(격차개선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간사 임명 등	
제51조(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제52조(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촉)	금고 이상의 형, 직무 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품위손상 등	
제53조(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업무 총괄,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직 직무 대행	
제54조(격차개선위원회 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규정	
제55조(격차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제56조(차별조사관)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 기능, 자격조건, 비밀 엄수의무 등	
제7장 보칙		
제55조(사무의 위탁)	시장 권한의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	신설 2017.9.21.
제58조(사전협의)	소속 기관 및 투자기관장이 성평등 촉진 정책 입안 시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추진결과 통보	
제59조(시행규칙)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7.18.기준)

서울시 조례는 중앙정부법 및 대부분의 지방정부 조례에서 적용한 ‘양성평등’ 이 아닌 ‘성평등’ 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이는 종래의 이분법적 젠더 관념을 넘어서 성별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적, 성적 차이를 반영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신경아, 2014). 또한 서울시 조례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젠더자문관 제도의 운영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해당 직제를 법제화한 특징이 있다. 가장 최근의 개정사항으로는,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¹⁸⁾이 포함되었고(제7장),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관련된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의성 있는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성평등한 여성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제8장).

이와 같이 서울시의 성평등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시 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에 있어 완곡하게 제시된 표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적극적 조치(제14조)의 경우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이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개선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¹⁹⁾된 사항을 반영하여 성인지 교육 관련 조항(제19조의2)은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성주류화 추진)과 관련된 조항을 분리하여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2019.7.18.)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른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정이 늦어진 만큼, 그동안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서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촘촘하게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총칙,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 기존에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임.

19)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표 II-5】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총 4장 20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정책의 수립·시행 시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 명시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름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투자출연기관 사업 중 성평등 실현에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등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해당 계획의 수립 전,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시행령 제5조에 따름	
제9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	
제10조(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소속기관과 투자출연기관의 홍보물 대상, 자문단 구성·운영 가능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시 소관 정책, 투자출연기관 수행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 대상 실시	
제12조(정책 등 개선 권고)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이행 결과 제출 의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출	
제3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1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명시	
제14조(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 임기, 해촉 등	
제15조(위원장 등)	위원회 대표 및 업무 총괄, 부위원장 직무 대행 조건사항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정기회의 개최 시기, 회의 의결 조건, 간사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 의결 후 위원장이 결정	

구성	주요 내용
제4장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지정 대상, 역할 등
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연 1회 실시
제20조(성별영향평가기관)	기관 설치 또는 지정 지원
제21조(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성별영향평가서 및 결과를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7.18.기준)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서 제도 추진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환류체계 명시 등이 누락된 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영역에서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민·관 협치에 기반을 둔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은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표 II-6 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16조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구성(위촉직 위원 20명 이내)	신설 2012.11.8.
	제3조(분과위원회의 운영)	각 분과별 소관 사항 심의·의결 규정, 자문의 회 규정, 위원의 제척·회피규정	신설 2012.11.8.
	제4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기금 지원(조례 39조)하기 위한 기금지원계획을 주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규정	
	제5조(기금의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기금신청서류 및 기금 지원 여부 결정 기준(적정성 등) 규정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 승인 규정(단, 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 사항 사전통보로 같음)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목적이외의 용도 사용·사업포기·기간내 사업 미착수 등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8조(정산서 등의 제출)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제출·집행잔액 반납 규정 (조례 5조)	
제9조(회계감사 등)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 및 사업평가 실시 (조례 8조)	
제10조(심의회 회의 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11조(감독)	정당한 집행을 위한 기금지원사업 장부 및 서류 제출 요구 조치 규정	
제12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대장·기금지급대장·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운용사항 기록 관리·보존 규정	
제13조(회의록)	위원회 간사(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가 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작성·보관 규정 (조례 7조)	
제14조(준용)	규칙의 규정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준용* 규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임기 2년, 수탁기간 만료일까지 연임 가능), 소집 횟수 및 개의와 의결 기준 규정	
제16조(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관리·운영규정)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자의 의무, 운영 규정 및 변경에 관한 시장 승인 규정	신설 2017.11.2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서 서울시에 여성가족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9월 29일 제정·시행되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일자리·안전·성주류화·일가족양립·보육 등 정책 연구개발 및 사업, 국내외 여성단체 및 모임의 교류 협력·지원, 여성 NGO 활동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성평등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례에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지향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의 사업, 임원의 임명 등과 직무, 이사회, 직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단의 기금, 수익사업, 운영재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사업 추진과 계획 및 결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Ⅱ-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총 19조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설립)	「민법」규정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
	제3조(재단의 사업)	정책연구·개발, 네트워크 거점화,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등 총 11개 사업 명시
	제4조(재단)	재단 재산 유형(기본재산, 보통재산) 및 구체적 사항의 정관 규정
	제5조(정관)	재단 정관에 기재된 각 호의 사항
	제6조(임원)	재단 이사진 구성 규정(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등 20명 이내)
	제7조(임원의 임명 등)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등 임명 방식 및 임기 규정
	제8조(임원의 직무)	대표이사 직무 규정, 감사 직무 및 이사회 출석 규정
	제9조(이사회)	재단 사업 수행을 위한 이사회 구성 및 출석·의결 규정
	제10조(직원)	재단 직원 임면 규정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재단 운영 및 사업 필요 자금 충당 규정, 시의 출연금 교부 규정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의 수익사업 규정 및 시장 승인 필요성 명시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 필요 재원 충당 규정, 지정기부금(자발적 기탁에 한정) 및 심의 규정(*심의: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제14조(사업연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하여 사업연도 규정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변경, 결산서류 제출 시기 등
	제16조(업무의 위탁)	여성·가족·보육·저출산 및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추진에 대해 시장이 재단에 시설 및 업무 위탁
	제17조(지도·감독)	재단의 업무 감독, 재단 운영 상황 보고, 업무 확인·검사, 시정명령, 시정조치 규정
	제18조(공무원 파견)	관계 법령에 준하여 재단에 소속 공무원 파견 규정
	제19조(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현재 조례에 명시된 ‘남녀평등’ 실현 목적은 현재적 시점에서 성평등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성평등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플랫폼

폼”이라는 기관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기관 운영의 목적이 ‘성평등’ 실현에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성평등 노동 분야

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최근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1%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1.9%에 비해 17.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부터의 성별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73.9%에서 2018년 71.9%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여성의 경우 2014년 53.5%에서 2018년 54.1%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별격차가 견고함을 알 수 있다.

▣ 표Ⅱ-8 ▣ 최근 5년간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고용 현황

(단위: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2014	63.3	53.5	73.9	4.4	4.4	4.4	60.5	51.1	70.6
2015	62.6	52.8	73.2	4.2	4.1	4.3	60.0	50.7	70.1
2016	62.6	53.2	72.8	4.2	4.2	4.2	60.0	50.9	69.8
2017	63.1	54.0	72.9	4.5	4.3	4.7	60.2	51.7	69.5
2018	62.6	54.1	71.9	4.8	4.6	4.9	59.6	51.6	68.4

* 출처: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경력단절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시 조례에서 정의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한다.²⁰⁾ 통계청에서 파악한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력단절여성은 2018년 324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비취업여성 629명의 51.5%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2조2(정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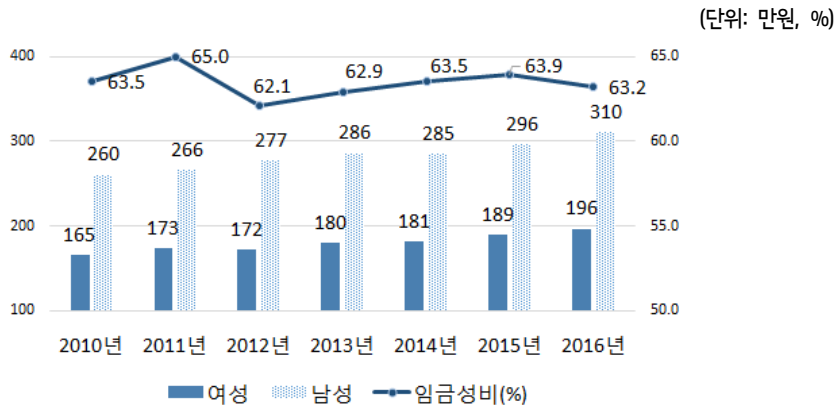
【표 II-9】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비율

(단위: 명, %)

연도	15-54세 기혼여성(A)	비취업여성(B)		경력단절여성(C)		
		계	비율(B/A)	계	비율(C/A)	비율(C/B)
2014	1,819	732	40.2	358	19.7	48.9
2015	1,791	745	41.6	369	20.6	49.6
2016	1,750	716	40.9	348	19.9	48.6
2017	1,684	676	40.1	348	20.7	51.6
2018	1,635	629	38.5	324	19.8	51.5

- * 주: 1) 매년 상반기(4월)에 실시하는 지역별고용조사로, 경력단절여성 현황은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을 조사한 결과임
- 2) 경력단절여성 :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인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 3) 비취업여성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함
-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

또한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2016년 서울시 거주 여성의 평균 임금은 196만원으로 서울시 남성의 평균 임금 310만원의 6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의 추이를 보면 2012년에 62.1%로 가장 악화되었으며, 가장 격차가 적었던 2011년에 도달했던 6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림 II-2】 서울시 성별 임금격차 추이

- * 주: 임금성비는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임.
- * 출처: 「2017 서울시 성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원자료 : 통계청(각 연도) 지역별고용조사)

2)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현황

서울시에서는 2019년 3월 ‘3·8 세계여성의 날’ 을 맞아 경제·노동 분야의 성평등에 역점을 둔 「성평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²¹⁾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를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이에 앞서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23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1976년 부녀복지관에서 시작한 서울시 여성일자리기관 24개소를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 로 통합 개편할 계획에 있다. 기존의 ‘여성능력개발원’ 은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본부로, 5개 ‘여성발전센터’ 는 권역별로 특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 로,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는 자치구별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센터’ 로 기능을 전환함으로써 시대 변화를 반영한 직업교육 기관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에 있다.

【표Ⅱ-10】 성평등 노동정책 및 여성일자리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성별 임금격차 개선 및 직장맘 고충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단계적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법적 근거 마련(8월, 조례 개정) • 차별조사관 채용(5월), 성별임금격차 개선 위원회 구성(9월) ※ 구성 전까지 TF운영 •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공개범위, 내용, 방법 등 표준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산하 기관 우선 시행 및 민간 부문 단계적 확대, 민간의 자율 개선 유도 •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맘 지원센터 기능 확대·개편으로 일하는 여성의 고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확대) 직장맘 개인고충 해소 → 직장맘의 고충 유발 노동환경 개선까지 확대 • (기능개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센터 기능 특화

21)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이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도자료, 2019.3.8일자)

목표	내용	추진계획
공공형 일자리 창출 및 거점별 창업 공간 조성·운영	기간제·시간선택형 일자리	• 보육교사, 보육도우미, 아이돌보미 등(약 1만 6천명)
	여성친화 뉴딜일자리	• 여성안심보안관, 양육돌보미 등(약 700명)
	여성공예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 아리움’ 운영	• 창업공간(53실) 및 컨설팅 지원, 온라인·모바일 공예샵 플랫폼 운영(59개 업체) • 공예페어 등 국내외 박람회 활동 지원, 여성공예 창업대전(’ 19.11월)
	여성창업 지원 등을 위한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조성	• 골조공사(’ 18.10~’ 19.9월), 마감·조경공사(’ 19.11월~’ 20.6월), 개관(’ 20.9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및 민간일자리 연계	여성일자리기관 운영 개선 및 기능 조정, 전문성 강화 추진	• 여성능력개발원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총괄·조정기능 강화 • 신직업군 발굴·확산,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인력개발기관 전문성 제고
	기업 수요 및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23개 기관 24개 과정)	• 실무위주의 직업훈련, 지역별 취업유망 직종 발굴을 통한 취업지원
	직업의식 전환 프로그램 ‘청년 원더 플러스’, ‘청년여성 원더풀 캠프’ 운영	• 청년여성 세미나(3회), 직무역량 강화 교육(10회) 등
	센터별 구인기업 초청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5~9월 중, 총 23회)	-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9쪽.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의 초점은 여성의 취업률 제고와 성별 임금격차 완화에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양육 및 아이돌봄, 즉 돌봄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보육교사, 보육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기간제·시간선택형 일자리, 여성안심보안관, 양육돌보미 등 여성친화 뉴딜일자리가 여성의 노동권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성평등 노동 관련 조례 현황 및 분석

서울시의 성평등 노동정책과 관련된 조례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여성일자리기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추진 중이며, 이에 본 장에서는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에서 드러나는 성별고정관념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5조,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29조)에 따라 서울시에 여성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0년 7월 25일 제정·시행되었다. 지금까지 총 14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총5장 2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 초기 제정 당시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설치, 운영, 사용료,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시행되었으나 2009년 5월 전부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그동안 늘어난 여성관련 시설의 종류와 기능을 명시하는 제2장을 신설하였고(2017.9.21.), 시설의 지정기준과 지정의 취소 규정, 사용허가, 시설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표 II -11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5장 28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개정 2019.3.28.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의 특별 규정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조례 준수
	제3조(기본원칙)	여성관련시설 설치 시 고려할 사항 및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 원칙
	제2장 여성관련시설	신설 2017.9.21.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여성관련시설(5개)의 유형별 목적 명시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	여성플라자의 주요 기능 명시: 공간 지원 및 여성 복지증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여성공예센터의 주요 기능 명시: 공간 지원, 창업활성화 사업 추진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 기능 명시	
제8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여성발전센터의 주요 기능 명시	
제9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 기능 명시	
제10조(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 명시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사업 소요 비용 지원 규정	
제12조(관계법령의 적용)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체성과 서비스 수행 적용되는 근거법령 제시	평생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제13조(이용자격)	여성관련시설 이용 자격 명시	
제3장 사용허가		신설 2017.9.21.
제14조(사용허가 등)	여성관련시설 운영 허가 조건 규정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사용허가 취소·정지, 사용 제한 조치 규정	
제16조(원상회복 등)	시설 운영 목적의 사용자의 원상회복 조치 규정, 손상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규정	
제4장 시설이용		신설 2017.9.21.
제17조(교육 이용)	우선적으로 교육과정 이용 해당자 조건 설정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시설 이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여성플라자·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면제 및 감면 규정	
제20조(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여성관련시설 교육과정 이용 정지·제한 조치 규정	
제21조(이용료의 반환)	여성관련시설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규정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5장 보칙		
제22조(위탁교육)	위탁교육 실시 및 사용료 등 규정	여성 직업훈련·창업 촉진·능력 개발 관련 교육
제23조(조직구성)	시설별 시설장·직원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4조(운영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설 관리·운영 관련 사무 지정 및 위탁 가능 명시	
제26조(관리·운영규정의 제정 등)	시설 관리·운영 사무 지정 및 위탁 시 운영위원회 의결 규정과 관리 운영규정의 시장 승인 규정	
제27조(지도·감독)	시설 운영 전반 지도·감독 규정, 위반 발견 시 조치 규정	
제28조(시행규칙)	조례 규정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5.2.기준)

여성관련시설의 명칭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9년 3월에 「성평등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6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서울시 24개 여성일자리기관의 명칭을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로 개편할 것을 제시하였다.²²⁾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여성을 ‘개발’이나 ‘발전’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데에서 한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와 지침 역시 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이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도자료, 2019.3.8일자)

【 표Ⅱ-12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총 15조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적용범위)	여성공예센터,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적용. 단, 여성플라자의 경우 이용료 부과·징수·반환 사항을 적용함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따름.
	제4조(조직구성)	여성관련시설에 시설장과 상근직원(취업 또는 창업관련 전문직업상담사, 교육·훈련, 서무·회계 등)을 두며 단, 여성공예센터의 시설장과 직원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름.
	제5조(시설장의 자격 및 임면 등)	종사자의 경우 인력개발, 취업·창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 3년 이상 규정, 시설장에 대한 임면·해임·정년 규정
	제6조(상근직원의 자격 및 임면)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전문직업 상담자, 교육·훈련 담당자, 서무·회계 담당자 등 자격 규정
	제7조(운영위원회)	동 조례 24조 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 관련 규정(임기, 소집횟수, 개의·의결, 심의사항)
	제8조(훈련강사 자격과 강사료)	직업능력 개발훈련 강사 규정 사항(전공자, 자격증 취득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제9조(이용자의 우대)	여성발전센터 직업교육과정 우선 이용자 자격 및 교육 비용 지원 규정
	제10조(이용료의 부과·징수)	시설별 이용료 규정
	제11조(이용료의 반환)	부득이한 사유로 미사용기간 이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
	제12조(기타 수입금의 조치)	당해연도 발생 수입금 및 당기 순이익에 대한 시설장의 조치 규정
	제13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기록부, 실적서, 이용자 명부, 비용수납조서, 인사기록카드, 회계장부, 결의 서류, 보고서철 및 문서철, 물품관리대장 등 기록·관리
	제14조(시설이전)	상황변동에 따른 시설 이전 결정 규정
	제15조(운영규정)	각 기관의 시설(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여성발전센터 보육실·창업보육센터 등)의 경우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기록 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2)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30일에 제정·시행되었다.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조례 내용은 경제활동촉진사업에 대한 내용 규정뿐 아니라 연도별 시행계획,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통계 작성과 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수립의 경우 유관 기관 협조를 조례에 명시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시설과 교육훈련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13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 10조	제1조(목적)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	
	제2조(정의)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 주부인턴쉽 프로그램, 사용자 용어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종합적 시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규정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근거법령*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규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5조
	제5조(실태조사)	2년마다 정기 실시 규정	
	제5조의2(통계의 작성·관리)	시행계획 수립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규정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각 사업(창업·직업교육, 컨설팅,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주부인턴쉽, 일과 삶 균형 등) 규정	
	제7조(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 고려 및 창업 성공 모델 보급	
	제8조(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현황 등 체계적 성과관리와 성과실적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등 규정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종합시책 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위해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제10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최초로 해당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상남도²³⁾이며, 서울시 조례의 경우 2012년 7월 30일에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비교적 빠르게 마련된 편이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 또한 여성의 고용 촉진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여성이 창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모델을 보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조례에 명시한 특징을 보인다.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며, 이는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에 한정되지 않으며, 여성이 비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로가 단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국미에 외, 2017)²⁴⁾ 여성의 경력단절 혹은 유지의 원인을 가족생활과 연결시킬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전의 경제활동 여부가 현재 시점에서 정책대상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점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책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이직과 재취업이 반복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점은 문제적이다. 이에 조례의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정의는 “현재 경제활동 중단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조례에 제시된 경제활동촉진사업은 맞춤형 창업교육, 직업교육훈련, 컨설팅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주부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제6조). 그런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의 경우 2014년 제정된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기반한 사업과 중복되며, ‘주부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일괄 정리될 필요가 있다.

23) 2010년 1월 14일 제정

24) 국미에 외(2017: 79-80)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임금이나 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요인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가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3. 여성안전과 권익 분야

1) 서울시 여성안전 관련 현황

서울시는 2013년 ‘여성안심특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7년까지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을 발전시켜오면서 여성범죄에 대한 도시 전체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이호선 외, 2018). 특히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이후 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문제제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본격화된 ‘#MeToo’ 운동을 계기로 젠더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성폭력 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6,129건에서 2017년 32,82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같은 시기에 32.6건에서 63.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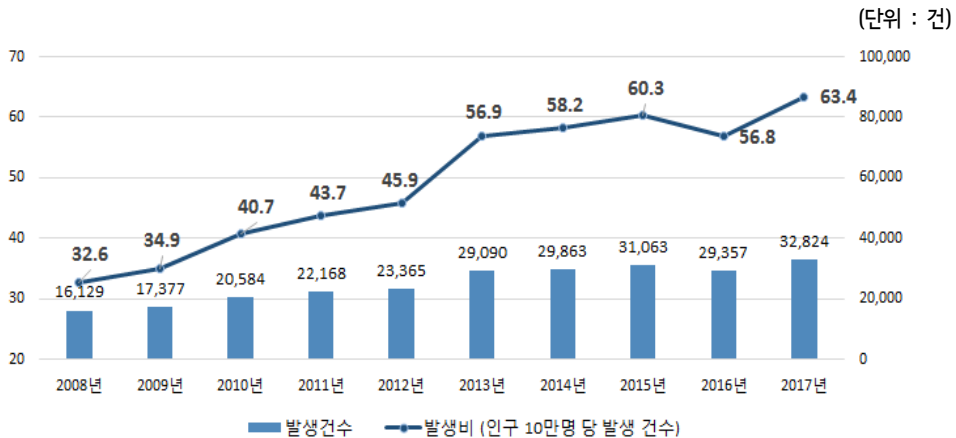


그림 II-3 |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발생비 추이(전국, 2008-2017년)

* 출처: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지난 10년간의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강간,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2008년 585건에서 2017년 6,615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Ⅱ-14】 지난 10년 간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변화(2008-2017년)

(단위: 건)

연도	강제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¹⁾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통신 매체 이용 음란	강간 등 상해/치상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강간등 ²⁾	특수 강도 강간 등	강간 등 살인/치사	전체
2008	6,080	585	3,621	854	378	1,625	-	2,601	368	17	16,129
2009	6,178	834	3,923	934	761	1,544	-	2,706	479	18	17,377
2010	7,314	1,153	4,384	1,593	1,031	1,573	-	3,234	293	9	20,584
2011	8,535	1,565	4,425	1,750	911	1,483	-	3,206	285	8	22,168
2012	10,949	2,462	4,349	1,332	917	1,208	-	1,937	209	13	23,365
2013	13,236	4,903	5,359	1,517	1,416	1,094	214	1,186	150	22	9,097
2014	12,849	6,735	5,092	1,8383	1,254	872	470	624	123	8	29,863
2015	13,266	7,730	5,274	1,901	1,139	849	543	283	72	6	31,063
2016	14,339	5,249	5,412	1,773	1,115	736	477	192	56	8	29,357
2017	15,981	6,615	5,555	2,085	1,265	716	422	144	34	7	32,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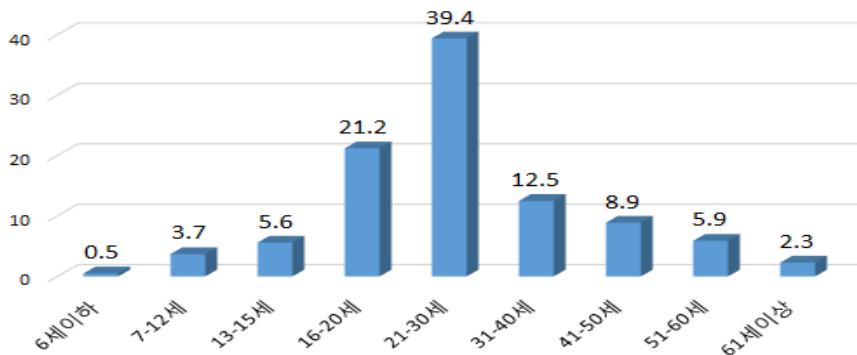
* 주: 1) 간음이 포함됨.

2) 범죄통계 원표상 죄명코드로 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 출처: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1-30세인 경우가 39.4%로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16-20세 21.2%, 31-40세 12.5%, 41-50세 8.9%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단위 : 건)



【그림Ⅱ-4】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연령분포(2017년)

* 출처: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서울시 성폭력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모두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검거율은 2013년 83.7%에서 2017년 94.0%로 높아지고 있으나, 반면에 구속조치된 인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3년 검거인원의 7.6%가 구속된 것에 비해 2017년 구속조치된 비율은 3.9%에 머무르고 있다.

【표Ⅱ-15】 서울시 성폭력 발생현황 추이

(단위: 건, %, 명)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2013	7,395	6,191	83.7	6,473	489	5,984
2014	8,523	7,835	91.9	6,925	426	6,499
2015	9,476	8,959	94.5	7,544	373	7,171
2016	8,342	7,694	92.2	8,066	397	7,689
2017	9,968	9,368	94.0	9,472	366	9,106

* 출처: 「2018년 서울시 성인지통계」, 136쪽.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검거인원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가 2017년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조치결과를 보면 2017년 구속된 인원은 62명으로 구속 비율은 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검거인원의 증가추이와 비교했을 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16】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추이

(단위: 건, 명)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2013	3,869	3,869	4,250	63	4,187
2014	4,543	4,543	4,892	49	4,843
2015	6,937	6,914	8,106	77	8,029
2016	7,700	7,745	9,142	74	9,068
2017	6,700	6,721	7,952	62	7,890

* 출처: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원자료: 서울시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2) 서울시 여성안전 및 권익정책 추진현황

젠더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치 비율이 미미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안전 분야에서의 핵심은 ‘안심’에 있다. 서울시의 안전분야 정책은 2013년 ‘여성안심특별시’ 계획 발표 이후, 2016년 ‘여성안심특별시 2.0’, 2017년 ‘여성안심특별시 3.0’으로 발전되어 왔다. 2013년에 처음 시행되면서 여성안전의 범주가 협소하게 적용된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에 ‘여성안심특별시 2.0’수행시에는 여성의 안심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였다. 또한 2017년 ‘여성안심특별시 3.0’을 시행하면서는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비롯한 여성혐오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주목해 정책의 중심을 기반구축에서 가치로 전환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표 II-17】 서울시 안전 분야 정책적 특징 및 한계

구분	여성안심특별시	여성안심특별시 2.0	여성안심특별시 3.0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의 여성안심종합대책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전망 등 여성이 안전한 물리적 도시환경 기반 구축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기술 채택 여성의 주체성 강화 여성안심 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의 가치를 기반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여성안심지킴이집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안심귀가 버스 운영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기술 채용 안심이 구축 ‘몰카’ 점검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데이트폭력 전용 상담콜 운영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젠더안전지표 개발 및 관리 재난약자용 안전매뉴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서울형 성평등 교재 개발 데이트폭력 방지대책 강화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 추진 여성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안전 범주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제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등 사회전반의 여성혐오 문화에 대응하는 전략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정책실 추진 과제 중심으로 일반 안전정책과 연계 미비 시민참여형 사업의 전문성 강화방안 부재

* 출처: 안현미 외(201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89쪽.

2018년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발표하면서 안전 분야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서울시 조직내부뿐 아니라 시민보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를 마련하였고,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표 II-18】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사업현황(2018년)

분야	과제 및 주요 내용
서울시 조직내부 및 시민까지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	1-1. 성희롱 예방 선도모델로서 서울시 내부시스템 보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기반 구축 • 2차 피해 관련자 처벌 강화 • 관리자의 성희롱 근절 의지 제고 • 성희롱 사건처리 위원회 기능 및 공정성 강화 • 실효성 있는 인사관리 확행 • 젠더폭력예방 전담부서 설치·운영 1-2. 서울시 산하기관 등의 예방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선도기관’ 지정 및 특별교육 • 투자출연기관 등 사건처리 관리강화 1-3. 서울시민 보호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서울#withU 프로젝트」추진 •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2-1.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성주류화 강화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 2-2. 시민 성평등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관련 인물·기관 성희롱·성폭력 관련시 엄정대처 • 데이트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강화 • 성평등교육 강화

* 출처: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5272호, 2018.3.21.)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19년 서울시는 급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여성 1인 가구 거주지 2-3개 지역에 대한 ‘SS 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확대 추진할 예정에 있다. 또한 서울시 여성안전서비스를 총괄하는 ‘여성안전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 중이다.

여성안전 및 여성권익 분야의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Ⅱ-19】 여성안전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스마트 여성안심망 「안심이」 앱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야 전담인력 확보(구별 2인)로 24시간 촘촘한 관제체계 구축 • 관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 총괄관제센터’ 설치(‘ 19.7월)
	공공에서 민간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안심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 점검장비 확대(25개→1,550개)를 통한 자체점검 지원 • 안심보안관 증원(50명→82명)으로 민간 개방 화장실 등 특별관리대상 집중 점검 • 민간의 자발적 점검 확대를 위한 공식 확인제도 도입 : 점검 확인증 부착
	물리적 여성 안심생활권 지속 확대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과 협력,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 등에 안심택배함 확대 : 210 → 230개소 ※ 현대오일뱅크와 MOU 체결(‘18.11월), 주유소 부지 활용 5개소 설치·운영(‘ 19.1월~) •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 귀가지원 : 약 35만건
성희롱·성폭력 없는 일터 조성, 서울 #WithU 프로젝트 추진	「서울 #WithU 센터」설치 타당성 검토 및 센터 설치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위원회(여성·노동 전문가 10명 내외) 운영, 여성가족재단 컨설팅 추진 • 센터 기능정립, 민간과의 차별화 및 협력·연계 등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
	소규모 민간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10~30인 → 10인 미만 사업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직원 대상 성희롱 개념, 사업주 역할, 피해자 지원방안 등 안내 •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배부 : 피해상담·지원방안, 가해자 처벌 등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캠페인’ 민간 협력 추진 및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협정체결 단체(5개 기관)와 공동사업 추진, 요식업·미용실 등 신규 참여 확대 • 매장 안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스티커 부착 : 프랜차이즈 요식업 등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10쪽.

【표Ⅱ-20】 여성권익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폭력 피해여성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개발을 통한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자립지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실시('19.7월) 및 사업 운영안 마련 ▶ 연구용역('19년)→시범사업('20년)→지원대상 단계별 확대('21년~) 지원방식 개선 : 보호 → 보호 + 자립지원(주거, 맞춤형 일자리 공급 등)
	폭력 피해여성 및 여성노숙인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 : 42개소 여성보호센터·영보자애원 입소 여성 노숙인 기초생활 보장 : 2개소, 519명
	이주여성 주거지원과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쉼터(4), 그룹홈(2), 자활지원센터(1)를 통한 치료·회복 및 자립 지원 : 7개소, 105명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에 선제적 대응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제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대상별·유형별 교육, 심각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실시, 효과적 정책방향 도출 디지털 성범죄 유통플랫폼 모니터링 및 피해영상 삭제, 피해자 심층상담 등 회복 지원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성평등 문화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대상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약 3천명), 토크콘서트, 성평등 캠페인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로 폭력예방 감수성 확산	일반시민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470회, 18,000명
	초·중·고교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성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0회, 18,600명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회, 3,200명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강화	온·오프라인 불법 성산업 감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기 인터넷 시민 감시단 모집·운영 : 대학생 등 1,000명 온라인 통합 신고 플랫폼 개발 : ' 19.6월 성매매 추방주간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시 : ' 19.9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운영(20개소), 재유입 방지 프로그램 실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일시 생활지원 및 상담카페 운영

목표	내용	추진계획
	취약계층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십대여성 직업훈련과정 및 자격증 취득반 운영 : 3개 과정, 50회 • 청소년건강센터 운영: 주말진료 및 찾아가는 의료·건강지원 서비스 시범운영 • 원예치료 신규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확대(100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증진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4명) 생활안정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 생활보조비 월1,000천원, 건강관리비 500천원, 사망조의금 1,000천원 • (국비) 생활안정지원금 월 1,404천원, 간병비 1,360천원, 장제비 3,000천원
	3·1운동 100주년 기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전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전시회 개최 • 위안부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오픈 •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 추진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및 일본군 '위안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학생·단체 대상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 500명 • 「찾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확대 : ' 18년 초,중학생 → ' 19년 초,중·고교생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11-12쪽.

3) 여성안전과 권익 관련 조례 현황 및 분석

서울시 여성안전 및 권익정책 추진에 관련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다. 본 장에서는 최근 젠더폭력 관련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중점 분석하였다. 그 외의 조례들은 최근의 정책요구에 맞춰 제정되었거나,²⁵⁾ 젠더폭력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²⁶⁾ 별다른 개선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을 갈음하였다.

25)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이에 해당된다.

26)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해당된다.

(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26일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네 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 총 3장 1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2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3장 18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관련 시책의 종합적 추진	*가정폭력방지 법률, 성폭력방지 법률, 성매매방지 법률
제2조(정의)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용어 규정	
제3조(책무)	여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각 호의 조치 규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한 지원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제2장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설치·운영 규정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인원·임기·소위원회 구성 규정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계획 수립 및 점검 등 7개 분야 기능 수행 규정	
제8조(위원장의 직무)	지역연대 대표 및 사무 총괄	
제9조(회의)	연 4회(분기별 1회)이상 개최 규정 (소속위원 1/3 이상 요구 시 개최 등)	
제10조(간사)	지역연대 사무처리 역할(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회의록 작성·보관	
제11조(위원수당)	지역연대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한 예산 범위 안의 수당 지급 규정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3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포함 사항 규정, 시행 계획 수립 시 지역연대 보고 및 자문 규정	
제13조(사업비의 지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지원	
제14조(여성폭력 실태조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지역연대에 결과 보고 및 결과를 정책수립 반영 노력	
제15조(예방 교육)	여성 폭력 방지 교육(연1회 이상) 규정 및 여성폭력 예방 강사 육성·지원	교육관련 실적은 차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
제16조(여성정책 모니터링)	관계법령·정책사업시행·평가·모니터링(연 1회) 실시 및 모니터링 결과 처리 절차 마련	모니터링 결과를 지역연대에 보고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 보관·제공 의무	
제18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현재 조례에서 ‘여성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해당 정의가 개정되어 시행 예정(2019.12.25)에 있다.²⁷⁾ 즉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여성대상 폭력 이외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영역까지 포함하게 된 만큼, 정책범위 역시 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것이 기대된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법령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

27)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여성정책담당관-3301호, 2019.3.14.)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 조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여성정책 모니터링을 명문화(제16조)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연간 3~4회의 운영위원회와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연대를 통한 관련기관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연대의 공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서, 여성을 아동과 함께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서울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2018년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부터 2차 피해 방지 대응책을 마련해 온 만큼, 2차 피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즉, 2차 피해의 정의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시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례상으로 관련기관 종사자의 처우에 관련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서 ‘피해자 보호 시설의 종사자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²⁸⁾한 점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우수 정책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²⁹⁾ 2018년 5월 3일 제정되었다.

28) 제32조(처우개선), 제33조(종사자 교육) 등이 해당됨.

29)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정계획” (여성정책담당관-1138호, 2018.1.17.)

조례 시행의 목적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위기 십대 여성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데 있으며, 위기 십대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조례이다.³⁰⁾ 현재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Ⅱ-22】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 10조	제1조(목적)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위한 서비스 제공과 필요 사항 규정	
	제2조(정의)	십대여성, 위기 십대여성,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용어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위기 십대여성에게 필요한 정책 마련·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	
	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 사업)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관련 시책 마련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사업에서 지속지원 필요시 만 21세까지 연장 가능(시장 보고)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수행 사업, 기능 규정	
	제6조(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	위기 십대여성 직업훈련 비용 지원 규정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지원시설의 운영 위탁 및 절차, 사업 소요비용 지원, 지원시설 채용 등 규정	
	제8조(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의 해지)	지원 시설 운영의 위탁 해지 사유 규정	
	제9조(지도·감독)	지원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위법 등 발견 경우 조치, 교부 예산 환수 조치 규정*	*지방재정법 38조의2
	제10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30) 유사한 조례로 경기도 여주시의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다(제정 2016.3.18.).

(3)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19년 1월 3일 제정되었으며, 전체 1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모두 포함하여 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특별관리대상 지정, 점검유도, 신고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Ⅱ-23】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주요 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 14조		
제1조(목적)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등 시민편의와 복지증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	
제2조(정의)	공공화장실 등,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 공공기관*, 불법촬영, 불법촬영기기 용어 정의	*시와 자치구, 직영기업·공사 및공단, 자치구출자·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 노력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기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사전협의 규정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화장실 지정하여 집중 점검 규정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소유자 또는 관리인 신청 시 민간화장실 점검, 자체 점검 시 점검장비 제공 및 자체 점검 확인증 제공 규정	
제7조(안심보안관)	불법촬영기기 점검 위해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 운영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화장실 발견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제9조(실태조사)	불법촬영 예방 시책 수립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예방과 점검 위해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가 점검 시책에 협조해야 함을 규정	

구성	주요내용	비고
제12조(교육 등)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대상 정기교육 실시, 점검 매뉴얼 작성·배포	
제13조(홍보)	경각심 제고와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보급	
제14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다른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구광역시에 제정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수원시·남양주시·화성시, 전라남도 목포시 등에서 시행 중에 있다. 최초로 제정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2018.12.27.)이며 대부분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에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다.

서울시 조례는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의심 화장실을 신고하는 체계 마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외에도 안심보안관 운영 규정을 두고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 전역에서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시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시책 협조와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도 조례 내에 명문화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4)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을 지원하여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 4일 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서는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시 차원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보조비, 진료비, 사망조의금 등의 지원 규정과 환수 규정,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 각 조항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 -24】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 8조		
제1조(목적)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 지원, 역사적 시각 정립,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 증진 등의 목적 규정	
제2조(정의)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피해여성근로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노력,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 마련 규정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기준: 위원회*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 거주한 사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제5조(지원사업)	생활보조비, 진료비, 사망조의금, 실태조사, 필요 인정 사업 등 규정	
제6조(생활보조비의 환수)	생활보조비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규정(미반환시 국제 체납 처분으로 징수)	
제7조(지원재원)	시장의 지원재원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제8조(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5)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2013년 8월 1일에 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네 차례 개정되었으며, 전체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사업뿐 아니라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학예활동과 공동 조사 등 국내외 교류활동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 및 환수 조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에 대한 시장의 우선적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 표 II -25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 8조	제1조(목적)	피해자 생활안정, 명예 회복 활동 지원, 역사적 시각 정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	
	제2조(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및 피해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대상: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거주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지원 사업)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 사업 규정 (생활 보조비, 사망 조의금, 실태조사)	
	제5조의2(기념사업 등)	기념사업·기념물관리·조사연구·학예활동 등 피해자와 관련한 시행 사업 규정	
	제6조(생활보조비의 환수)	생활보조비 지급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규정, 미반환 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	지방재정법 32조의8
	제7조(예산 확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우선적 확보 규정	
제8조(시행 규칙)	조례 시행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7.18.기준)

4. 소결

이 장에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 중 ‘여성’ 관련 분야, 즉 성평등 분야의 정책 현황과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들을 살펴보았다. 성주류화, 성평등 노동, 여성안전 및 권익 분야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성평등한 정책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성주류화 분야에서는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의 기반이 되는 성평등 기본 조례와 서울시 여성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재단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성평등 도시 서울’ 구

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 준거이다.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정을 추진했던 전례³¹⁾가 있는 만큼,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시 또는 시장의 책무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평등정책을 추진 “할 수 있다” 가 아닌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해야 하며, 이는 본 조례뿐 아니라 성평등정책 추진에 관련된 여성·가족정책 모든 분야의 관련 조례에 확대·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 노동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여성발전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이는 여성을 ‘발전’의 대상에서 보던 관점을 넘어서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반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협소한 정의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가족구성과 유지를 중심으로 규정된 지금의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정의는 정책이 제공되는 현재적 시점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현재 경제활동 중단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안전 및 권익 분야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다. 해당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시장 책무에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규정된 2차 피해의 정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신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서울시의 성평등정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 역시 이에 맞춰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 중인 경우가 많다. 2019년 1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개정을 통해 성평등 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명시를 추진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권은 성평등의 문제인 동시에 노동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일부 조항을 포

31) 젠더자문관 제도 도입이나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범위 규정 포함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합시킬 것인지, 아니면「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성평등 관점에 기반을 둔 전면적 개정을 요구할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또한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시 또는 시장의 책무가 소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III

서울시 가족·돌봄 분야 정책과 조례 현황

1. 보육 및 아이돌봄 분야
2. 가족 분야
3. 외국인·다문화 분야
4. 소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시 가족·돌봄 분야 정책과 조례 현황

1. 보육 및 아이돌봄 분야

1) 서울시 아동 돌봄 관련 현황

자녀보육과 아이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문제는 돌봐야 할 자녀가 있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주된 양육자를 ‘여성’으로 전제하는 가운데,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은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어 온 경향을 보인다. 김은설 외(2016)에 따르면 취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유자녀여성의 43.0%가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취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Ⅲ-1】 유자녀여성의 취업 중단 사유(2015년)

(단위: %)

구분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일이 육아에 지장을 주어	발전가능성이 희박하여	몸이 힘들어서	기타	
전체	6.7	43.0	16.0	1.9	27.0	5.3	
영유아 구분	영아	4.3	42.0	15.6	3.0	28.9	6.2
	유아	8.9	44.0	16.3	1.0	25.3	4.5

* 주: 영유아 가구 구분은 보육연령에 따름.

* 출처: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110쪽.

서울시 2세대 신혼부부가구의 자녀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2017년). 그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2015년 37.0%에서 2018년 39.5%, 2017년 40.5%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Ⅲ-2】 서울시 2세대 신혼부부가구 자녀 보호 현황(2015-2017년)

(단위: %)

연도	합계	가정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 서비스 (종일제)	혼합	가정양육+ 돌봄서비스 (시간제)			기타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시간제)	유치원+ 돌봄서비스 (시간제)		
2015	100.0	53.7	37.0	2.5	0.2	3.7	1.8	1.8	0.1	3.1
2016	100.0	53.2	39.5	2.7	0.1	2.8	1.2	1.6	0.1	1.6
2017	100.0	50.0	40.5	2.5	0.1	3.5	1.6	0.1	0.1	3.4

* 주: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5년 미만인 부부를 의미함.

* 출처: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원자료: 통계청, 2017년 신혼부부통계(서울시))

서울시의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2017년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34,867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97,215명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74,098명으로 전체의 31.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 이후 이용인원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 표Ⅲ-3 】 서울시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2017년)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소계	234,867	74,098	1,878	5,337	97,215	42,804	795	12,740
	남	120,730	38,133	960	2,740	49,885	22,051	412	6,549
	여	114,137	35,965	918	2,597	47,330	20,753	383	6,191
만0세	계	20,662	3,272	21	112	5,508	11,350	20	379
	남	10,738	1,648	10	55	2,835	5,993	7	190
	여	9,924	1,624	11	57	2,673	5,357	13	189
만1세	계	51,423	12,033	170	657	18,082	17,625	108	2,748
	남	26,402	6,145	95	338	9,348	9,029	47	1,400
	여	25,021	5,888	75	319	8,734	8,596	61	1,348
만2세	계	60,686	16,107	317	1,009	26,219	13,651	225	3,158
	남	30,964	8,240	158	519	13,383	6,938	114	1,612
	여	29,722	7,867	159	490	12,836	6,713	111	1,546
만3세	계	38,413	14,412	366	948	19,642	91	169	2,785
	남	19,827	7,433	194	492	10,121	40	92	1,455
	여	18,586	6,979	172	456	9,521	51	77	1,330
만4세	계	32,854	14,219	451	897	14,973	59	143	2,112
	남	16,905	7,368	236	463	7,654	36	73	1,075
	여	15,949	6,851	215	434	7,319	23	70	1,037
만5세	계	28,386	13,052	442	828	12,388	25	130	1,521
	남	14,576	6,716	213	435	6,320	13	79	800
	여	13,810	6,336	229	393	6,068	12	51	721
만6세 이상	계	2,443	1,003	111	886	403	3	0	37
	남	1,318	583	54	438	224	2	0	17
	여	1,125	420	57	448	179	1	0	20

* 출처: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보육통계」, 99-100쪽.

서울시의 시설유형별 보육기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8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4】 서울시 보육시설별 이용 만족도(2017년)

(단위: 점/10점, %)

구분	평균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국공립	7.39	86.5	9.9	3.6
법인	6.94	64.6	35.4	0.0
민간개인	6.92	72.2	24.8	3.0
가정/놀이방	6.91	74.8	22.4	2.8
직장	8.69	90.9	9.1	0.0

* 주: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응답한 가구주 대상

* 출처: 「2018년 서울 서베이」, 116쪽.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을 보면, 원장의 경우 가정 어린이집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순서를 이룬다. 반면 보육교사는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의 순으로 종사자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경우 대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원장 5,978명 중 여성이 5,839명으로 97.7%를 차지하며, 교사의 경우 여성교사가 39,723명으로 전체의 9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 종사자는 주로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조리원 등 교사가 아닌 직종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5】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2018년)

(단위: 명)

구분	전체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원장	계	5,978	1,473	28	106	1,723	2,359	33	256
	여성	5,839	1,457	28	102	1,645	2,319	33	255
	남성	139	16	0	4	78	40	0	1
보육교사	계	39,944	12,547	203	651	14,121	9,284	167	2,971
	여성	39,723	12,518	201	648	14,005	9,237	164	2,950
	남성	221	29	2	3	116	47	3	21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특수 교사	계	450	389	7	32	20	-
	여성	436	379	7	30	18	0	0	2
	남성	14	10	0	2	2	0	0	0
기타*	계	8,964	2,591	58	206	3,410	1,862	42	795
	여성	7,845	2,537	52	170	2,470	1,794	40	782
	남성	1,119	54	6	36	940	68	2	13

* 주: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조리원 등

* 출처: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한편, 아동돌봄과 관련하여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6개월간 집에서 30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가끔 있었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37.7%, ‘자주 있었다’ 고 응답한 경우가 1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9세 아동의 경우 보호자 없이 있었던 적이 ‘가끔 있었다’ 고 응답한 비율이 30.9%에 이르며, 10-17세의 경우에는 ‘가끔 있었다’ 39.2%, ‘자주 있었다’ 40.2%로 전체 응답자의 4/5에 해당된다. 또한 어른 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있게 되는 시간은 1-2시간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성인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2017년)

(단위: %)

구분	지난6개월간 집에서 30분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있었던 적 ¹⁾			1주일에 어른 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일수 ²⁾			어른 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 하루 동안 시간 ³⁾					
	전혀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거의 없다	1-2일	3-4일	거의 매일	1시간 미만	1-2 시간	3-4 시간	4시간 이상	
전체	45.4	37.7	19.9	63.1	22.1	6.9	7.9	23.5	45.5	19.9	11.1	
연령 ⁴⁾	0-9세	66.7	30.9	2.5	72.5	23.0	3.7	0.8	35.2	52.9	11.4	0.4
	10-17세	20.6	39.2	40.2	51.9	21.1	10.7	16.3	15.7	40.7	25.5	18.1

* 주: 1) N=8,525, 2) N=8,409, 3) N=3,134, 4) p <.001

* 출처: 김진석 외(2017),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314쪽.

서울시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 및 돌보미 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를 보면, 시간제의 경우 2012년 449,148건에서 2017년 707,543건으로 증가했으며, 종일제의 경우 2012년 2,333건에서 2017년 8,13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은 2017년 현재 2,63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규양성인원은 매년 500명 내외에 이르고 있다.

【표Ⅲ-7】 서울시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 및 돌보미 수 추이(2012-2017년)

(단위: 가구, 건, 명)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시간제	연계가구	42,655	34,268	50,464	-
	연계 건수	449,148	557,486	679,039	707,543
종일제	연계가구	440	428	1,243	-
	연계 건수	2,333	3,930	7,118	8,136
아이돌보미	전체	2,057	-	2,638	2,638
	신규양성	588	701	581	400

* 주: 1) 시간제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가구의 임시보육, 등학교 보조, 학습보조 등 지원
 2) 종일제는 만3개월-만36개월 이하 영아가구의 돌봄지원(총 200시간) → ' 17년 7월 이전 총 480시간, 이후 600시간임.
 * 출처: 안현미 외(201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50쪽.

시간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맞벌이 가구인 경우가 47.5%로 절반 가까이 이르며, 그 다음은 일반가구 23.9%, 다자녀가구 13.2%, 한부모가구 11.3%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Ⅲ-8】 서울시 시간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18년)

(단위: 명, %)

구분	가구특성별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장애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기타양육 부담	일반
아동수	739	1	23	3,095	859	246	1,557
비율	11.3	0.0	0.4	47.5	13.2	3.8	23.9

* 주: 2018년 8월 한달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의 수를 합산한 수치임.
 * 출처: “서울시 자치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자료” (김송이 외, 2018)

2) 서울시 보육 및 아이돌봄정책 추진현황

(1) 보육정책 추진현황

서울시는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을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육교사의 업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둔 보육정책을 추진해 왔다(안현미 외, 2018: 98).

2019년 서울시 보육정책은 고품질 국공립어린이집의 균형적 확충,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보육현장과 함께하는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맞춤형보육서비스 확대 및 새로운 보육문화 확산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 개선 및 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려는 계획에 있다.

【표Ⅲ-9】 보육 분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지역여건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별 이용률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적 국공립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북권의 특성(주택밀집, 노후)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우선 지원 비강남권 행정동은 시설 매입비 등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민관상생울 기조로 지속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100개소 확충으로 이용률 제고('19년 40% → '22년 50%) 기존시설이 많은 곳은 민간의 국공립 전환 유도, 시설이 부족한 곳은 신축 신규설치 시 열린육아방, 야간·통합보육공간 등 돌봄 공간 우선 확보
	기존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아동친화적 시설개선 중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 정밀 안전진단 실시(40개소) 및 개축 추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친환경 교구·자재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국공립 전환시설 보육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직원 스스로 보육 품질을 개선하는 셀프컨설팅 : 100개소 월령별(36개월 미만) 보육프로그램 지원 방문컨설팅 : 200개소

목표	내용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철학·운영경험 공유를 위한 우수시설 원장과의 멘토링(433명)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수 보육교직원 확보(보육서비스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별 교육과정 도입 : 신규교사(기본역량), 경력교사(중간관리자 역할) •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채용 지원 ※ ' 18년 1,095명 신규채용 지원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14쪽.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교사 처우개선은 수당지급 등을 위한 예산지원이 주를 이룬다.

【표Ⅲ-10】 보육 분야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역량강화 지원	국공립교사 체계적 교육(보육서비스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5명 교육 실시(' 18년 2,043명) ※ 교육시간 단축, 실습혜제 등 교육개선
	기존교사 보수교육 (14개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8,700명(' 18년 7,749명)
	맞춤 컨설팅 실시(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340개소(' 18년 373개소)
	업무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 9,253명 • 대체교사·조리원 지원 : 398명
	청소, 경비수 등 전담인력 지원으로 교사 근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전담인력('키즈클린사업') : 6개 자치구, 218명(일자리정책과), 안전관리요원(전기·보일러 등 경비수) : 20개 자치구, 20명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서류 간소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작성하는 서류(보육일지, 알림장)의 간소화된 개선서식 보급
교사 처우개선	0~2세반 근무환경개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2만원, 연 521억원
	3~5세반 담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30만원 → 33만원, 연 845억원
	처우개선비(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45천원(국공립) ~ 200천원(민간), 연 391억원
	중식비(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5천원, 연 5억원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15쪽.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서울시의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공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표 간소화 등을 통해 보육 품질지표를 개선하려는 계획에 있다. 또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교직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표Ⅲ-11】 보육 분야 민간어린이집 운영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선	우수시설 평가주기 확대와 평가 간소화 등 평가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마다 재공인 → 우수시설은 5년으로 공인기간 연장 평가절차 간소화(기존 2차→변경 1차)로 현장부담 대폭 경감
	평가지표 항목 단순화 및 보육 품질지표 신설·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형 기본요건(평가인증, 행정처분 여부 등)은 ‘충족여부’ 만 판단 아동급식, 보육교사 복지, 서류간소화 등 질적 지표 보완·강화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	보육료 0~2세 6.3% 인상, 정부미지원 3~5세 7.1%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 및 물가 상승률(1.5%) 반영
	평가지표 항목 단순화 및 보육 품질지표 신설·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형 기본요건(평가인증, 행정처분 여부 등)은 ‘충족여부’ 만 판단 아동급식, 보육교사 복지, 서류간소화 등 질적 지표 보완·강화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 조성	쾌적한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청정기 약 24천대 (6천개소, 렌탈비) 지원 실내공기질 측정기 1,506대 (6,000개소, '18년 설치)
	안심보육 강화를 위한 교직원의 금지행위 규정 마련(조례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운행 후 영유아 하차 미확인, 폐쇄공간 영유아 방치 금지 등
기타사항: 보육현장 의견수렴 강화 등	매월 현장 소통 및 공유회의로 시책공유 및 현장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보육단체 합동워크숍 개최(2.13~14, 속초수련원)
	부모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55%('18년) → 10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세 128천원, 만4~5세 111천원 지원, 연 332억원 ※'18년 49~58천원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16쪽.

서울시 맞춤형보육은 양육자의 근로형태와 아동가구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추진된다. 즉,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4시간·휴일·365일 열린어린이집 등 양육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춤보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표Ⅲ-12】 보육 분야 맞춤형보육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양육자의 근로형태, 아동·가구특성에 따른 ‘맞춤보육’ 지원	부모의 출퇴근시 편의를 위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 ’ 18년 9개소 → ’ 19년 50개소
	24시간(70개소)·휴일(80개소)·365일 열린어린이집(4개소) 운영	-
	가정양육 부모의 주간 보육 공백시 시간제 보육 지원	• 시간제 보육(시간당 4천원) : 78개소, 106개반 운영
	장애아 전문·통합(363개소), 다문화 통합(58개소) 등 어린이집 운영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보육 가치 증진	생태친화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유아의 창의성 향상	•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생태친화 프로그램 매뉴얼 마련 • 컨설턴트 양성, 어린이집 교육 확대, 생태 어린이집 시범 운영(3개 자치구 20개소)
	‘서울상상나라’ 운영	•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다양한 영유아프로그램 운영(1,773회 교육)
영유아의 꿈과 창의력을 키우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운영	서울혁신파크內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 창의력 증진 놀이공간 조성, 자연친화적인 어린이놀이숲 조성 등 • 투자심사관련 사전 타당성 검토 진행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19.1~3월)
	서울시 복합문화시설 추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 18.12월~ ’ 19.6월)	-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17쪽.

(2) 아이돌봄정책 추진현황

서울시는 2018년 11월 1일자로 여성가족정책실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 심사·설치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보미 기본계획 수립,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지정·운영, 아이돌봄미 광역거점기관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는 아이돌봄담당관을 신설하였다.³²⁾

서울시 아이돌봄정책은 지역기반의 사회적 돌봄 실현을 목표로 초등돌봄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근로환경 개선, 가정양육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우선, 초등돌봄체계 구축사업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중심으로 하며, 2019년 94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에 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우리키움참여단과 온마을 아이돌봄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다.

【 표Ⅲ-13 】 아이돌봄 분야 초등돌봄체계 구축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방과 후·방학 중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 구축, 돌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놀이+체험’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마을건축가가 참여하여 아이가 가고 싶고, 부모가 안심하는 공간 구성 												
	94개소 신규설치, '22년까지 400개소 확충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18</th> <th>'19</th> <th>'20</th> <th>'21</th> <th>'22</th> </tr> </thead> <tbody> <tr> <td>신규 설치 (누적)</td> <td>4개소 (개소)</td> <td>94개소 (98개소)</td> <td>119개소 (217개소)</td> <td>119개소 (336개소)</td> <td>64개소 (400개소)</td> </tr> </tbody> </table>	연도	'18	'19	'20	'21	'22	신규 설치 (누적)	4개소 (개소)	94개소 (98개소)	119개소 (217개소)	119개소 (336개소)	64개소 (400개소)
	연도	'18	'19	'20	'21	'22								
	신규 설치 (누적)	4개소 (개소)	94개소 (98개소)	119개소 (217개소)	119개소 (336개소)	64개소 (400개소)								
‘우리키움참여단’,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여건·아동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키움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우리키움참여단) 부모, 아이 및 마을활동가 등 구성, 키움센터 전 과정에 시민 참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시·구·교육청·돌봄기관 참여, 상호협력 및 소통창구 마련 													
맞춤형 아이돌봄 정보 제공을 위한 소통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정보 대시민 포털서비스, 키움센터 이용 예약 서비스 등 제공 다양한 아이돌봄정책 정보제공, 「우리 키움참여단」 소통계시판 운영 등 													

32) “여성가족정책실 조직개편(‘18.11.1.字 알림)” (여성정책담당관-19141호, 2018.11.1.)을 통해 기존 1실 4담당관(여성정책, 보육, 가족, 외국인다문화) 22팀에서 1실 5담당관 26팀으로 개편하였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아이돌봄정책팀, 아이돌봄사업팀, 아이돌봄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내용	추진계획
지역아동센터 돌봄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상생·협력관계 도모	• 지역아동센터 일반아동 이용비율 지속 확대('18년 20% → '19년 30%)
	노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대비 보건 마스크 지원	•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개소당 10~30백만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6매/1인)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26쪽.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관련 사업은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키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처우개선비 및 복지포인트 상향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표Ⅲ-14】 아이돌봄 분야 종사자 근로환경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우리동네키움센터」종사자 역량강화 및 근로여건 개선	「아이돌봄추진지원단」구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교육 체계 마련	• 아이돌봄 종사자 기본 소양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매뉴얼 개발 • 관리자 대상 센터 운영 교육 및 평가·환류 체계 마련
	돌봄선생님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시간제’ 중심 인력구성을 ‘시간제+전일제’로 탄력적 운영 • 시간제 임금단가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 개선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및 복지포인트 지원	•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18년 월 30만원 → ‘19년 월 33만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18년 월 15~20만원 → ‘19년 월 20~26만원)
	유급 병가제도 및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유급 병가제도 운영(연60일 내) 및 병가 사용시 대체인력 파견 •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유급휴가 지급(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 10일)
아이돌보미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시간당 급여 인상,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명절상여금 신설	• 시간당 급여 인상(29.2%↑) : (‘18년) 7,800원 → (‘19년) 10,080원(주휴수당 포함) • 근로기준법상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주15시간이상 활동시) • 명절상여금 신설: 연 20만원(10만원×2회) 지급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27쪽.

가정양육 부담 완화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지원대상 및 연간 이용시간 확대, 아이돌보미 추가양성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또한 열린육아방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돌봄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보육반장을 배치할 계획이다.

【표Ⅲ-15】 아이돌봄 분야 가정양육 부담 완화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로 이용가정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	서비스 이용자 지원범위 및 이용시간 확대에 맞춰 가정 양육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확대: '18년 중위소득 120% 이하 → '19년 150% 이하 • 연간 이용시간 확대: '18년 중위소득 120% 이하 → '19년 150% 이하
	아이돌보미 서비스 집중시간대 설정,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 시간대를 서비스 집중시간대로 설정, 아이돌보미 우선 배치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로 아이돌봄 수증가에 탄력적 대응	수요 집중 시간대의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아이돌보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 1,886명 추가양성 : '18년 3,114명 → '19년 5,000명 • 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수 4:1 → 3:1로 확대, 이용가정 대기시간 단축
	수요자 맞춤형 돌봄 실현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추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8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19년 9개(1개 추가 공모)
	아이돌보미 확충 우수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구 및 서비스기관에 인센티브 배분
함께 돌보는 영유아 돌봄공간 설치 및 육아 전문상담 지원	돌봄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 육아 해소를 위한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확충 ※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18년 42개소 → '19년 70개소 •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배치 : 맞춤형 육아 상담 및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육아정보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1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동과 연계하여 출산 및 전입가정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육아 고충 해소 •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 대상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육아 상담제공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28쪽.

3) 아동 돌봄 관련 조례 현황 및 분석

서울시 아동 돌봄정책 관련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조례」 등 4개 조례를 살펴보았다.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고,³³⁾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와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조례」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1999년 5월 10일에 제정되었다. 현재까지 총 15차례 개정되었으며 총 8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관련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임, 보육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 운영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 그리고 제4장은 방과후 보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서울시 보육 조례에서는 저소득층 아동까지 보육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조례의 목적에서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의무를 세분화하여 보육교직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³⁴⁾으로 개정(2019.3.28.)되었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33)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에 해당된다.

34) 제21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가 이에 해당됨. 출처: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보육담당관-24923호, 2018.12.21.)

【표Ⅲ-16】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8장 25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조의2(정의)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방과 후 보육, 어린이집 차량* 정의	*도로교통법 52조
	제2조(책임)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	
	제2조의2(보육계획 수립·시행)	보육계획의 기본방향, 설치 및 수급, 보육교직원, 운영 및 평가, 보육비용, 차량 안전관리 및 증진, 기타 사항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 6조
	제4조(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등 15명 이내 위원, 간사 자격 및 구성 기준 규정	
	제5조(기능)	시의 보육사업 심의 사항 규정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제6조의2(위촉해제)	위원의 직무 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시장이 위촉해제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사무 총괄·회의 소집 및 주관(위원장), 위원장 보좌 및 직무 대행(부위원장), 사무 처리 및 회의록 작성·관리(간사)	
	제8조(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 연 1회 개최, 회의 소집·회의 개의 및 의결 기준 규정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을 하거나 위원이 스스로 심의 회피하는 기준 명시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개정 2014.3.20.
	제10조(설치 및 운영)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아동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및 영유아 및 아동 전용 체험시설(영유아 및 아동 발달 촉진과 육아 지원) 설치와 운영	
	제11조(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2조(센터), 아동복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27조(체험시설)에 따라 설치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12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보육정보전산망 구축 및 홍보 등)와 체험시설의 업무 내용(체험학습 기회 제공 등) 제시	
제13조(구성)	센터 구성원 및 운영 위탁 규정, 체험시설 운영 위탁 규정, 센터장 및 종사자 임명·해임, 시설장 임기 규정	
제13조의2(지도·감독)	센터등의 운영 사항 및 필요 사항 시장에 보고, 확인·검사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주요 업무 추진 등 심의, 위원회 구성(9명 이내), 회의 개의 및 의결 기준, 비용 지급 기준	
제4장 방과 후 보육		
제15조(어린이집의 설치)	방과 후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기준, 증축 및 개·보수 설치 기준	
제16조(어린이집의 기준)	방과 후 어린이집 시설 기준 및 운영기준 법령 제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 23조
제17조(교육 훈련)	방과 후 보육교사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제5장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안전 확보		
제1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학대 방지 등 안전과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근거법* 명시	신설 2015.10.8. *영유아보육법 15조의4,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점검)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 규정	신설 2015.10.8
제19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차량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를 어린이집 인증에 반영 **차량 하차 확인 등 영유아 안전 위해행위 금지(도로교통법)	*개정 2019.3.28. **신설 2019.3.28
제19조의3(어린이집 급식관리)	건강·영양 및 위생 등 철저한 관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결과 반영 *1인당 급식비 이하 비용으로 급식 제공 금지	*신설 2019.3.28.
제2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보육교직원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실 고지 규정,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실시	아동복지법 26조 2항
제6장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		신설 2019.3.28.
제21조(보육교직원 노동여건 개선)	보육교직원 노동여건 개선 노력 명시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21조의2(보육교직원 의 책무)	신체적 고동·고성·폭언 등 정신적 고동·가 해 금지, 주의 의무, *어린이집 내외부 폐쇄 된 공간에 영유아 혼자 두는 행위 금지	조항신설 2017.7.13 *신설 2019.3.28
제7장 비용		
제22조(비용의 보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예산 범 위 내에서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 조, 체험시설 비용 지원 기준	
제23조(비용 및 보조 금의 반환 명령)	이미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 는 전부의 반환 명령 기준	
제8장 보칙		
제24조(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인권 교육 실시, 영유 아 보호자 교육 실시(시 비용 보조)*, 안 전 교육(시 비용 보조)*	*신설 2019.3.28.
제 25 조(어린이집의 평가)	어린이집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모범 어린이집 지정의 경우 특별지원	사회복지사업법 42조2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의 경우 정책대상의 보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개정이 요구된다. 즉, 아동과 양육자의 보편적 권리로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방과 후 보육’ 과 관련한 정의(제1조의2의 6) 및 어린이집 설치(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보면, 특정한 가족형태와 계층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조례에서 ‘방과 후 보육’ 의 정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육정책은 ‘일·가족 양립’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으며, 이에 우선적 정책대상으로 ‘맞벌이 부부’ 에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맞벌이 부부’ 를 제시함으로써 돌봄 대상 아동을 맞벌이 부부의 자녀로 한정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보편 복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정의는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도록 규정된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 조항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육 조례의 부분개정이 아니라, 2019년 1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방과 후 보육에 관한 조항이 제시되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을 보면, 돌봄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이 대상 방과 후 돌봄” 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2년 12월 30일 제정·시행되어 현재까지 8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전체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조례는 설치계획 수립, 용지확보, 설치기준, 설치비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내의 설치, 공동주택 내의 설치, 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용지 및 시설 유형별로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Ⅲ-17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주요 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 19조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영유아보육법 12조
	제2조(정의)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보호자, 공공건축물 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타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름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매년 보육수요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규정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심의 사항 규정	
	제6조(위원회의 기능·운영)	위원회 심의 사항, 회의 개의·의결 기준,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규정	
	제7조(위원의 임무)	청렴서약, 심의 과정 취득 자료 누설 금지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위원이 제척·기피·회피되는 경우 규정	

구성	주요내용	비고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 출석 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	
제10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고려사항·우선지역·공간 활용 등 규정	
제11조(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 시 어린이집 설치 우선 검토 규정	
제1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SH공사 신축이나 시 매입 임대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전환, 시설 개선비 지원 규정 등	
제13조(민·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민간부문이 설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최초운영권 관련 규정	
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	도시개발법 등 어린이집 설치 가능 구역에 관한 각 법령 제시	
제15조(유희지 및 유희시설 활용)	보육에 적합한 시설을 신축·증축·보수하여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제16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관계법령의 설치 기준(친환경 자재 사용) 제시	영유아보육법
제17조(설치비용의 보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 보조 규정	영유아보육법 36조, 동법 시행령 24조
제18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조항(10-12조, 15조) 규정	
제19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7.18.기준)

(3)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 영유아 및 어린이의 놀이·체험·전시 공간인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3년 3월 28일 제정·시행되었다. 총 2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차례 개정되었다. 서울상상나라의 대관 규정, 운영시간,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반 1인, 국가유공자, 세자녀 이상을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등 다양한 대상에게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Ⅲ-18】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 24조	제1조(목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체험관, 입장료등, 대관, 사용자 정의	
	제3조(시설 및 기능)	시설의 구성 요소,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기능 명시	
	제4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휴관일 기준 및 운영시간 명시	
	제5조(연회비 및 입장료 등의 징수)	입장료 납부 및 감면 혜택 기준, 회원제(연회비 납부자) 안내 등	
	제6조(입장료의 감면)	입장료 무료 대상자 기준 명시	
	제7조(사용의 금지 및 제한)	관람 금지 대상자·일일입장제한·관람 제한 기준 명시	
	제8조(행위의 제한)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금지된 행위 규정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체험전시물 및 시설물 파괴·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 또는 원상복구 의무 규정	
	제10조(대관허가의 범위 등)	시설 및 설비 대관 허가 기준, 대관 범위 기준, 대관료 명시	
	제11조(대관허가 절차)	대관 신청서 및 행사 사용 계획서 작성 사항 및 제출 기한, 대관 허가 통지 기한, 대관료 납부 기한	
	제13조(대관허가의 제한)	대관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규정	
	제14조(사용시간)	연장 필요 시 사전허가 필요 명시	
	제15조(대관료의 감면)	대관료 감면 기준 및 범위 규정	
	제16조(대관료의 반환)	납부된 대관료 전액 및 일부 반환 기준	
	제17조(부대설비)	행사 필요 시설·설비 설치 승인 및 복구 의무, 복구 불이행시 조치 규정	
	제18조(대관자의 손해배상)	관리의무 태만으로 시설 설비 손실·훼손 시 배상 또는 원상복구 의무 규정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전 동의 없이 권리 전대 또는 양도 금지 규정	
	제20조(홍보물의 부착)	서울상상나라 사용에 따른 홍보물 부착 시 사전 협의 의무	
	제21조(위탁운영 등)	위탁 시 필요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조례 준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성	주요내용	비고
제22조(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회 구성(12명 이내) 및 임기·위촉해체 기준·심의 자문 사항 규정	
제2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 명시	수유 및 모성보호실, 가족활동 및 휴게실, 의무실, 식당 등
제24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7.18.기준)

해당 조례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22조)을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출산육아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부서이므로 ‘보육담당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다.

(4)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에 설치·신고된 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7월 28일에 제정·시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실행 주체, 이용 대상, 사업 내용, 사업비의 지원과 지도·점검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2차례 개정되었으며,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Ⅲ-19】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9조	제1조(목적)	지역아동센터의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책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보호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	
	제3조(용어의 정의)	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업 정의	
	제4조(사업실행 주체)	아동의 방과후 아동교육·복지사업 수행의 적합한 요건 규정	아동복지법 50조의 적합한 요건 규정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 이용가능한 대상자 명시	아동복지법 3조1호
	제6조(사업)	사업(영양, 복지, 교육, 학교 적응력, 문화활동 등)을 통해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 해결 노력	
	제7조(사업비의 지원)	센터 사업의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사업비,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아동급식비, 기타 등)	
	제8조(지도·점검)	관계공무원이 센터 운영,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 지도·점검	
	제9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7.18.기준)

(5)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3월 1일에 제정·시행되었다.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확대하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제정하였으며 총 1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각종 돌봄 지원 사업,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돌봄 지원 사업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및 아이돌보미 사업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및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돌봄 종사자의 처우보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정을 필요로 한다.³⁵⁾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20】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17조	제1조(목적)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 도모	
	제2조(정의)	아이, 온마을아이돌봄, 온마을아이돌봄 시설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 규정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제5조(기본계획 등)	4년마다 돌봄 지원 계획 수립 규정	
	제6조(돌봄 지원 사업)	영유아 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상담 제공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초등돌봄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등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 규정	법인 등에 위탁 가능
	제8조(지도·점검)	관계공무원이 돌봄시설의 운영·설비기준·안전사고 예방·종사자 관리·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를 설치하고 15명 내외로 인원 구성*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명시
	제10조(협의회의 기능)	돌봄지원 사업 관련하여 심의 사항 규정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2년, 1회 연임) 등 규정	
	제12조(회의운영)	정례회 개최 횟수, 임시회 개최 기준, 개의 및 의결 기준, 회의록 공개원칙 명시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협의회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 기준, 협의회 기피 신청 규정,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회피 기준	

35)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관련 조례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 해촉 및 위원직 유지 부적합 인정 기준	
제15조(수당지급)	협회의회의 회의 출석 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	
제16조(운영세칙)	협회의 운영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함	
제17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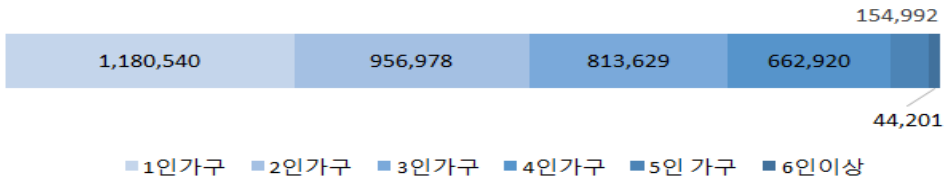
본 조례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로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장의 책무가 “돌봄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지원” 임을 감안했을 때 돌봄의 수혜자뿐 아니라 돌봄노동 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아이돌봄지원법」에서 ‘아이돌보미’의 노동법적 지위나 권리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박선영, 2019),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례에서도 아이돌보미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종사자 처우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족 분야

1) 서울시 가족 관련 현황

서울시 가족정책은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노동시장, 가족구조, 젠더 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이는 서울시 가족 변화에 기반을 둔다. 우선, 서울시의 가구원수별 가구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현재 1인 가구가 1,180,540 가구로 전체 가구(3,813,260 가구)의 31.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2인 가구로 25.1%를 차지하며(956,987 가구),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진다.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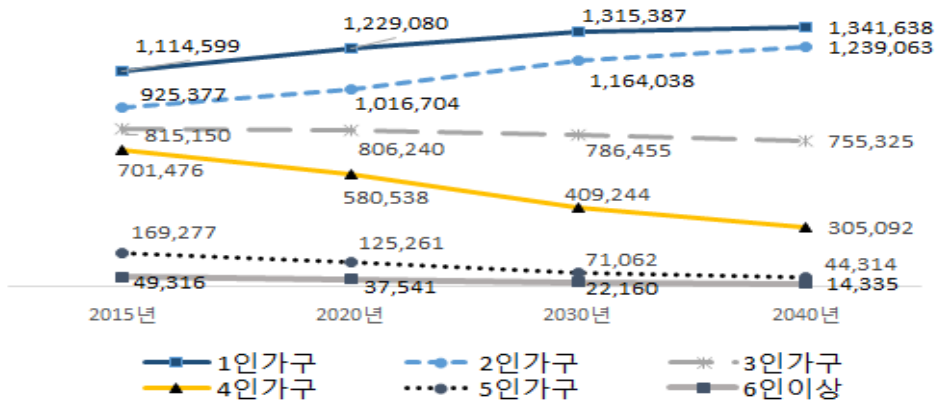


【그림Ⅲ-1】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규모(2017년)

* 출처: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장래가구 수 추이를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3인 가구 이상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2040년에는 현재 절반 이하(2015년 701,476 가구 → 2040년 305,092 가구)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인 가구의 증가추세를 보면 2015년에 비해 33.9% 증가(2015년 925,377 가구 → 2040년 1,239,063 가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 가구의 경우 20.4%(2015년 1,114,599 가구 → 2040년 1,341,638 가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9.5%에서 2040년 36.3%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단위 : 가구)



【그림Ⅲ-2】 서울시 가구원수별 장래가구 수 추이(2015-2040년)

*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시도별 2015년 가구기준)

서울시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17년 현재 전체 1,180,540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는 619,016 가구로 52.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5-29세로 89,117 가구에 달한다(여성 1인 가구의 14.4%).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를 보면 30-34세(66,969 가구), 20-24세(64,818 가구) 등으로 나타나, 여성 1인 가구 대부분은 20-34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1】 서울시 1인 가구의 연령별 현황(2017년)

(단위: 가구)

구분	전체	성별	
		여성	남성
합계	1,180,540	619,016	561,524
20세 미만	14,190	8,421	5,769
20~24세	103,451	64,818	38,633
25~29세	179,568	89,117	90,451
30~34세	152,797	66,969	85,828
35~39세	112,945	49,350	63,595
40~44세	87,540	37,384	50,156
45~49세	87,497	35,575	51,922
50~54세	73,980	30,629	43,351
55~59세	83,472	40,882	42,590
60~64세	75,860	43,568	32,292
65~69세	61,577	39,507	22,070
70~74세	52,768	37,795	14,973
75~79세	47,620	36,435	11,185
80~84세	29,344	23,791	5,553
85세이상	17,931	14,775	3,156

* 출처: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2018.8.)

서울시의 여성가구주 추이를 보면 2005년 23.6%에서 2015년 31.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상태에 따른 여성가구주 분포를 보면 2015년의 경우 비혼인 경우가 전체 여성가구주 가구 수의 33.9%로 다수를 차지한다.

【 표Ⅲ-22 】 서울시 여성가구 추이(2005-2015년)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계					여성가구주 비율
			유배우	사별	이혼	비혼	
2005	3,309,890	780,573	145,393	249,013	121,527	264,640	23.6
2010	3,504,297	984,950	227,300	266,728	159,343	331,579	28.1
2015	3,785,433	1,199,259	271,622	312,483	208,224	406,930	31.7

* 주: 가구주란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의미함.

*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서울시의 한부모가구는 2015년 현재 전체 가구의 9.93%에 이르며, 이는 2005년 전체 가구의 8.64%에서 증가한 것이다. 여성 한부모가구는 2005년 227,793 가구에서 2015년 282,560 가구로 54,767 가구 증가했으며, 남성 한부모가구는 2005년 60,803 가구에서 2015년 93,194 가구로 32,391 가구 증가했다. 2015년 여성 한부모가구는 282,560 가구로 전체의 75.2%에 이르고 있으며, 사별 및 이혼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 표Ⅲ-23 】 서울시 한부모가구 현황(혼인상태별, 2005-2015년)

(단위: 가구, %)

구분	한부모가구 ¹⁾ (일반가구 대비)	여성 한부모가구					남성 한부모가구				
		전체	사별	이혼	비혼	기타 ²⁾	전체	사별	이혼	비혼	기타
2015	375,754 (9.93)	282,560 (100.0)	125,090 (44.3)	121,359 (42.9)	4,510 (1.6)	31,601 (11.2)	93,194 (100.0)	17,642 (18.9)	37,380 (40.1)	1,613 (1.7)	36,559 (39.2)
2010	351,848 (9.84)	280,338 (100.0)	89,465	83,109	-	107,764	71,510 (100.0)	15,496	31,144	-	24,870
2005	288,596 (8.64)	227,793 (100.0)	97,350	65,734	-	64,709	60,803 (100.0)	16,669	28,926	-	15,208

* 출처 : 김영정 외(2017),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23쪽.

* 주: 1)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한부(모)와 비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일반가구: 집단가구(6인 이상 비친족 가구, 기숙사, 사회복지실 등) 및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

2) 기타: 만15세 미만 가구주 등(2005년, 2010년은 미혼모/부 가구 포함)

3) 한부모가구 비율 산정 시 부(모)의 혼인상태가 '유배우' 인 가구는 제외

서울시 저소득층³⁶⁾ 한부모 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한부모 가구 중 수급자 비율은 2005년 8.03%, 2010년 9.12%, 2015년 10.62%로 증가추세에 있다. 구성 비율은 2015년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재가보호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62.7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36.98%인 것으로 나타난다(김영정 외, 201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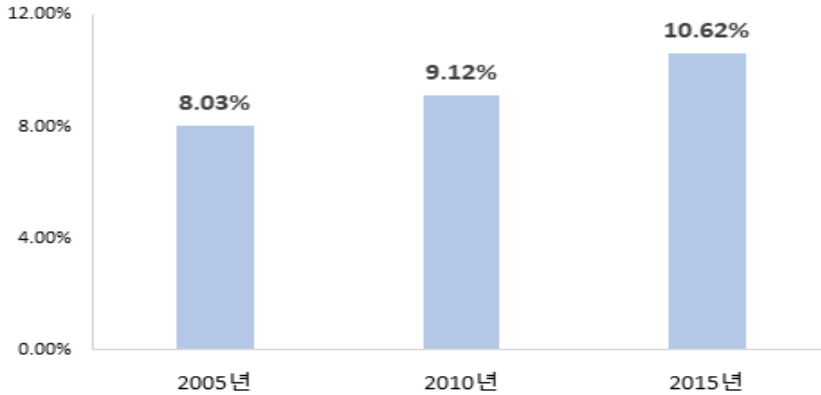


그림 Ⅲ-3 | 서울시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추이(2005-2015년)

* 출처 : 김영정 외(2017),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24-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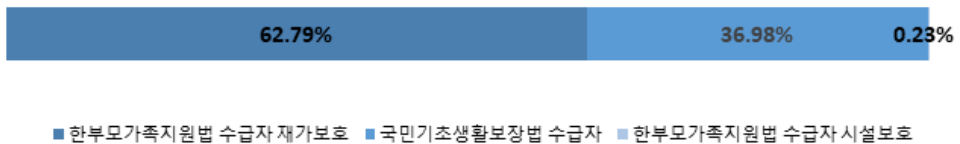


그림 Ⅲ-4 | 서울시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수급지원 유형(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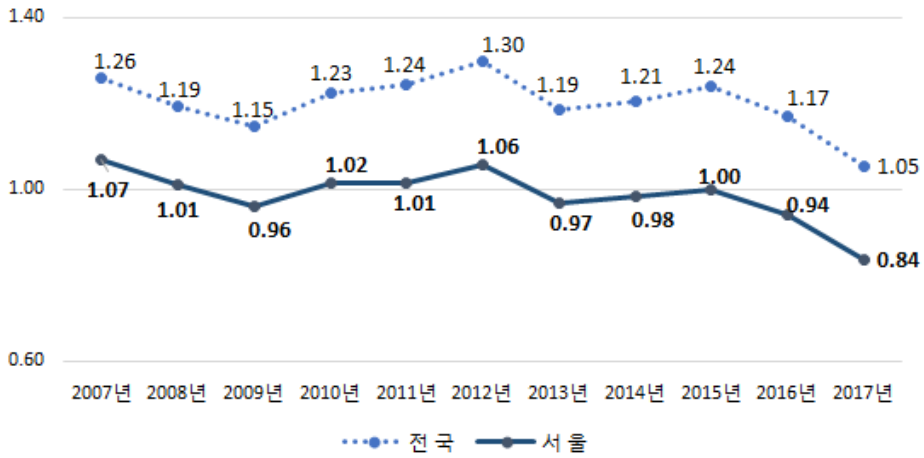
* 출처: 김영정 외(2017),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24-25쪽.

한편, 서울시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을뿐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의 비교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³⁷⁾

36) 서울시 한부모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 수급자를 포함함.

37) 2017년 현재 광역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서울 0.836, 부산 0.976, 대구 1.067, 인천 1.007,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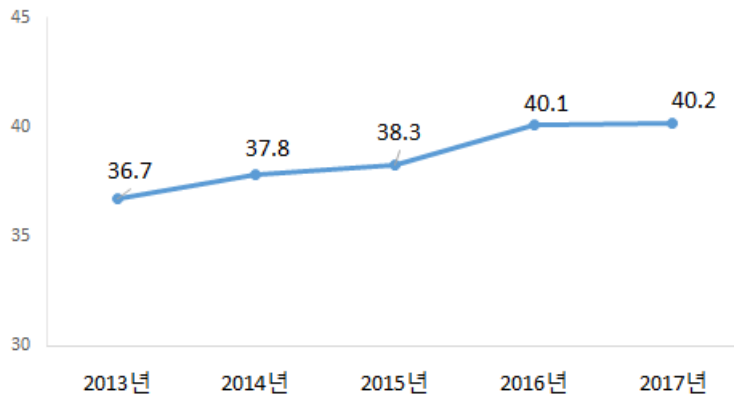


Ⅲ-5 서울시 합계출산율 추이(2007-2017년)

* 출처: 통계청, “2017년 출생통계(확정)” 보도자료(2019.08.21.)

마지막으로 서울시 맞벌이 가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36.7%에서 2017년 40.2%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단위 : %)



Ⅲ-6 서울시 맞벌이 가구 추이(2013-2017년)

* 주: 맞벌이 가구란 유배우 가구 중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를 의미함.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지역별고용조사의 부가 항목(맞벌이 가구)으로 집계된 자료임).

광주 1.053, 대전 1.075, 울산 1.261로 나타난다. 출처: 통계청, “2017년 출생통계(확정)” 보도자료(2019.08.21.), 38쪽.

2)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현황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서울시 가족의 생애주기·형태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현재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2019~2022)」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³⁸⁾

2019년 서울시 가족정책은 다양한 가족 지원, 가족·양육 친화환경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중심 보호체계 구축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지원,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으로 구분된다.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안전, 사회적관망, 건강·돌봄 등 6개 분야, 33개 세부과제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표Ⅲ-24】 가족 분야 다양한 가족 지원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가족구성원간 이해와 배려가 깃든 건강가정 조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건강가정서비스 제공(광역 및 25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밀리사이트 운영, 행복한 결혼식 워크숍, 부자유친 등 가족친화프로그램 서울가족학교 (예비신혼부부·부모교실·찾아가는 아버지교실·패밀리쉐프 등, 32천명)
	놀며 배우는 가족축제의 장 제공으로 가족 화목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의 달 기념행사(5월), 서울가족축제(9월, 2천명) 다둥이 마라톤(5월), 예비아빠 육아골든벨 행사 개최(7월) 아이조아 아빠교실(10회), 아이조아 놀이교실(95회) 운영
	취약·위기가족 생활도움지원 및 가족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학습지원, 심리·정서 지원, 사례관리 등('18년 6개→ '19년 8개 건가센터)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가사·양육부담 경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단가 및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14세, 월13만원('18년) → 만18세, 월20만원('19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18만원('18년) → 월35만원('19년)
	한부모 가사서비스 및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가사·양육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정 지원 가사도우미 파견서비스 (150 가구,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한부모 학업·취업 역량강화(매칭건수 3천건)

38)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2019~2022년) 학술연구 추진계획” (가족담당관-7816호, 2019.4.11.)

목표	내용	추진계획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 관계망 지원 확대	1인 가구 지원 1차 기본계획(' 19~' 23년)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9.2월, 16개 추진부서 · 일자리/주거/안전/사회적관계망/건강·돌봄 등 6개 분야, 33개 세부과제
	사회적관계망 활동공간 및 커뮤니티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8년 4개 구 → ' 19년 25개 구 · 공유물품 지원, 마을공동부엌,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등
	1인 가구 지원 온라인플랫폼 구축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 19.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빅데이터 수집·활용 방안 및 플랫폼 운영모델 제시(조직과 시책연구비)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20쪽.

가족·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확대, 출생축하용품 지원, 다자녀행복카드 발급 확대 등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업컨설팅 및 우수기업 표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자녀행복카드 발급의 경우 서울시의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급건수를 확대할 계획 이어서 수혜범위 조정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Ⅲ-25】 가족 분야 가족·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아동수당 지원(' 19.1~8월 만6세미만 ⇨ ' 19.9월 만7세미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계별 확대로 아동수당 전면 지급 추진 · 지급금액 : 월 10만원(대상아동수 446,865명) · 총 소요예산 : 4,856억원(국비60%, 시비28%, 구비12%)
	서울시 출생아에게 출생축하용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출생아 대상 1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지원(약6만명) · 서울시민으로의 출생을 축하받고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
	다자녀행복카드 발급 확대 및 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48,005매(' 18) → 50,000매(' 19) · 참여 협력업체 발굴·확대: 4,091개 업체(' 18) → 4,300개 업체(' 19) · 다둥이행복카드 협력업체 30~50%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용품, 문화·놀이시설, 외식, 주유, 서울시공영주차장, 한강시민공원 이용료 등

목표	내용	추진계획
일상과 직장에서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업장 규모별 기업컨설팅 집중 실시(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인 이상 사업장(380개 업체) 및 투자출연기관 대상 집중 컨설팅 추진(23개 기관) 기업CEO 등 젠더감수성 및 찾아가는 일·생활 균형교육 실시(200개 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표창 및 워라벨박람회 개최(' 19.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친화 우수기업 발굴 확대(' 18년 11개 → ' 19년 20개 기업)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가족친화 기업·가족이 참여하는 토크쇼, 우수 기업 홍보 및 우수인재 리쿠르팅 행사 추진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21쪽.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이행하고 아동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³⁹⁾ 2019년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사업으로 인증 지속추진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비 공모지원, 아동정책 참여 박람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아동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표Ⅲ-26】 가족 분야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사업 활성화	아동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속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지역 특화사업비 공모 지원(5억원) ※ ' 18년 17개구 지원 한국유니세프 협력,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속추진(' 18년 11개구 → ' 19년 18개구)
	아동이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는 아동친화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정책 참여 박람회 개최(아동권리 모니터링단, 놀이 공모전 등) 아동참여 아카데미 운영,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등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받는 눈높이 맞춤형 아동정책 추진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본격 추진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예고(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관련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환류 한부모가족, 보호아동 등 시범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기준 및 실시계획 마련

39)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8년~2022년)”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7878호, 2018.4.19.)

목표	내용	추진계획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매2년마다 시행('17년 최초 조사)
	아동이 맘 놓고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아동안전보호 추진	• 공기질 향상을 담보하는 실내 놀이터 설치 지원(자치구 공모 3개소, 21억원) • 가정재난·신변생활 안전 등 찾아가는 이 동안전체험교실 운영 • 실종 아동찾기 예방캠페인 그린리본마라톤 대회 개최(9월)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예방 등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 9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2개소 운영 등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운영 확대	• '18년 3개소 → '19년 4개소 ※ 관악, 중랑, 동대문, 노원('19년 신규)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권역별 설치 타당성 검토	• 서울시 5대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타당성 등 연구용역 추진(1억원)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22쪽.

마지막으로 아동중심의 보호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아동보호체계」는 ‘원가정 보호’를 목표로 추진되며, 이에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가정복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Ⅲ-27】 가족 분야 아동중심 보호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원가정 보호를 위한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전면 개편	요보호아동 발생 시 자치구가 초기 개입부터 가정복귀까지 지속 지원	• 자치구(드림스타트, 아동보호팀) : 실태조사, 원가족복귀계획 관리, 보호의뢰 • 아동복지센터: 보호조치 및 유형결정, 원가족복귀계획 이행여부 모니터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연계, 요보호아동 발굴,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족지원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아동은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이 집중 사례관리
	자치구 인력배치 개편, 현장의견 반영으로 전달체계의 효율적 설계	• '18년 초 배치된 자치구 e위기아동행복지원시스템 인력 우선 활용 • 설명회('19.1.), 구청장회의를 거쳐 ‘전담 인력 확보’를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목표	내용	추진계획
보호단계부터 완전자립시까지 개별맞춤형 자립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컨트롤타워 『아동자립 통합지원센터』 설치 (' 19~'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시설 아동 대상 ‘퇴소 전 자립준비’ 위주로 지원해온 한계 극복 ⇒ 요보호아동 전체에 대해 보호 중~보호종료 후 사회적응·자립 시까지 개별 사례관리 단기 자립형그룹홈, 자조모임·직업훈련 공간대여, 위기지원, 일자리·법률지원 등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14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사자 중 희망자를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로 양성, 사회적응력 강화 등 지원 ※ 사회성과보상사업(' 16.8~' 19.8.) :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용, 시설 경계선급 아동교육(100여명)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9.4월~, 841명/월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 17년 4월이후 시설퇴소아동(퇴소시설소재지 무관, 거주지 기준 지원) ※ ' 19년 시범사업(국비보조)으로 소요 예산 변경 가능
	주거 지원 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19.6월~, 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H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비(150만원 상당) 및 사례관리(상담, 생활지원 등)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23쪽.

3) 가족 관련 조례 현황 및 분석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과 관련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가 있다.

본 장에서는 성별고정관념이 남아있어 개선이 요구되거나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완되어야 사항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의 조례의 경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건강가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1월 2일 제정·시행되었다. 2012년 개정 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2장 서울특별시건강가정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운영실적 저조를 근거로 삭제되었다(2012.7.30.). 이에 따라 제1장 목적과 정의, 제3장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칙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Ⅲ-28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내용	비고
총 4장 17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건강가정기본법
제2조(정의)	법령*의 용어 정의를 따름	건강가정기본법
제2장 삭제		2012.7.30 삭제
제3~10조 삭제	-	건강가정위원회 운영 근거
제3장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제11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근거법 규정 및 제공 서비스 명시	건강가정기본법 35조
제12조(조직)	센터장 포함 팀 구성(상담·교육·문화)과 소관업무 규정	
제13조(운영위원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12인 이내)·위촉·운영 관련 규정	
제14조(센터에 대한 지원)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운영 경비와 사업비 지원 규정	
제15조(운영의 위탁)	민관기관에 위탁·운영 관련 규정	
제16조(보고 및 조사)	센터장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함	

구성	주요내용	비고
제4장 보칙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사업 수행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지원 규정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 기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나, 조례 목적에서 제시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즉 현재 조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며,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명시된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법 제16조), ‘가족실태조사 실시’ (법 제20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본 조례가 변화하는 가족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 근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조에서 관련 용어에 관한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는데,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가족구성 양상에서 확인되듯이 특정한 가족형태가 정상적이거나 보편적일 수 없으며, 이를 감안한다면 다양한 가족상황, 혼인여부 또는 이와 관련된 임신과 출산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이숙진, 2017: 6). 이에 서울시 조례의 ‘가족’ 정의에 ‘사실혼’을 포함하고, ‘사회적 가족’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가족정책의 수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2)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의료 등의 사업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1월 7일 제정·시행되었다. 현행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차례 개정되었으며, 총 3장 1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표Ⅲ-29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3장 15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조의2(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름	
	제3조(시장의 책무)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	
	제2장 한부모가족 지원		
	제4조(지원대상)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대상자 및 제외 규정	
	제5조(실태조사)	시책 수립을 위한 한부모가족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	신설 2014.5.14.
	제6조(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내용 규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조정 관련 규정	
	제8조(환수조치)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및 환수 방법과 절차 규정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사업 수행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 규정	
	제3장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10조(설치 및 기능)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과 관련한 서비스 명시	
	제11조(조직 및 구성)	센터 구성원(센터장·종사자) 및 자격기준 명시	
	제12조(운영위원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10인 이내) 및 자격기준 명시	
제13조(운영의 위탁)	비영리법인 위탁 기준 및 구성원(센터장·종사자) 임명 또는 해임 기준, 민간 위탁 관련 규정 준용 조례 제시		
제14조(센터에 대한 지원)	조직과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규정, 예산 범위 내 경비와 사업비 등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규정		
제15조(보고 및 조사)	센터장이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계공무원이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해당 조례는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2010년대 전후로 제정되었다. 서울시 조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시(제5조)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지만,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가사서비스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 조례의 목적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인 점을 감안할 때,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가 요구된다. 즉,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적 지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부모의 자립과 능력개발을 실현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김영정 외, 2017: 39),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조례 제6조에서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추진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 시 생활보장 및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만큼,⁴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기능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거점기관 운영⁴¹⁾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거점기관을 통해 미혼모·부의 임신초기 상담 및 정보 제공, 경제적 지원, 복지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건강가정생활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를 참조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2016년 3월 24일에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기존의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사회적 고립 방지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⁴²⁾ 서울시 조례는 1인 가구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향을 감안하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의 경우 미혼모·부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41) 경기도의 경우 2017년 7월에 「경기도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42)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조례가 이에 해당된다.

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조례는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Ⅲ-30】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11조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제2조(기본이념)	1인 가구를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	
	제3조(정의)	1인 가구, 1인 가구 복지정책, 사회적 가족도시, 공동생활가정, 소셜 다이닝 등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추진의 기본원칙 규정(공동체 회귀, 공유사회 지향, 시민 참여, 다양성 존중)	
	제5조(책무 등)	1인 가구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 시민의 협력 의무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타 조례 제·개정 시 조례 취지 고려 및 부합해야 함을 규정	
	제7조(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5년 주기), 시 정책과 연계 필요성 강조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시의회 보고	
	제9조(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실시 결과의 계획 수립 활용, 실태조사 내용, 기관 위탁 등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1인 가구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 규정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5.16.기준)

해당 조례는 최근 일부개정(2019.5.16.)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제7조 제3항), 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제9조 제2항)하였다.⁴³⁾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1년 7월 28일에 제정·시행되었다. 현재까지 총 4차례 개정되었으며, 현행 조례는 결혼·임신·출산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출산 및 양육 관련 서울시 정책에 관한 자문단 구성에 관해 명시하였고,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Ⅲ-3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총 14조	제1조(목적)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출산 및 양육지원, 다자녀가족,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 다둥이 행복카드, 출산축하용품, 대상 아이, 보호자, 지원대상자 등
	제3조(시장의 책무)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결혼·임신·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사항을 규정
	제4조의2(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신청절차, 지원내역 등 규정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할 사항 규정
	제6조(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시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사항 규정
	제7조(출산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해 추진할 사항 규정

43)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9293호, 2019.5.2.)

구성	주요 내용
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사항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필요 사항 규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매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정책 반영 규정
제10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책자문단 운영)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 구성 규정
제11조(기업·민간단체 등의 지원)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 가능한 인센티브 지급 노력
제12조(교육 및 홍보)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실시(위탁 가능)
제13조(포상)	포상 기준 규정(다자녀 모범가정, 다둥이 행복카드 모범업체)
제14조(시행규칙)	조례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5.3.기준)

해당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주요 조항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해당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⁴⁴⁾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조례 제2조 제3항의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정해야 하며, 해당 조례뿐 아니라 서울시 가족정책 관련 조례 전반에 걸친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본 조례의 목적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혜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특히 서울시 출생인구의 감소 경향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다자녀가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한 자녀 가족만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율이 최하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자녀 수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아동이 있는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자녀행복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0844호, 김혜영 의원 외 10인 발의, 2017.12. 17.)

그 다음으로, 제4조의2에 명시된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출산축하용품’은 ‘출생축하용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해당 용품들은 출산 축하의 의미보다는 양육 지원의 의미에 가까우며, 출산 당사자인 여성뿐 아니라 남성 배우가 혹은 다른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⁴⁵⁾ 더구나 현재 서울시 가족정책담당관의 가족·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업무가 ‘출생축하용품 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용어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6조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육아기 노동자 중심의 제도 제안 및 활용을 넘어 돌봄 지원을 포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일·생활 균형’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5)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26일 제정되었다. ‘다자녀 가족’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보육료 및 양육 지원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45)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2017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에서 시민제안에 따라 시행된 정책으로,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60여개 품목 중에서 자유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서울이해 피박스(<https://www.seoulihappybox.com/>)

【표 III-32】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내용
총 10조	제1조(목적)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 보육, 보육시설, 보호자, 보육료 지원 정의
	제3조(적용범위)	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에 대하여 적용
	제4조(기본원칙)	다자녀 가족 자녀 양육 지원 원칙 (경제적 비용 경감, 지원의 형평성, 중복지원 금지, 보호자의 신청 등) 규정
	제5조(지원대상)	다자녀 가족 지원 내용 해당자 기준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 보호자 등)
	제6조(다자녀 가족 지원 내용)	보육료 지원과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 내용 및 기준 규정
	제7조(비용의 분담)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지원 수당에 대한 시·자치구 비용 부담 규정 및 저소득 가족 보육료 지원 단서 조항
	제8조(지원신청)	보육료 지원 또는 수당 신청 절차 및 수당 지급일 규정
	제9조(환수조치)	보육료 또는 양육지원 수당 환수 조치 기준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지원의 경우 동 조례에 우선하여 행해짐을 규정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6)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양성평등’ 한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2012년 5월 22일에 제정·시행되었다. 지금까지 총 5차례 개정되었으며, 2장 1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 책무, 시행계획과 수립 및 협조, 가족친화조성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표 33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2장 11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 발전	
	제2조(정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마을환경, 직장맘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의무 및 예산상의 조치 노력 규정	
	제4조(시민의 책무)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 노력 의무 규정	
	제5조(사업주의 책무)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직장근무 위험요인 제거, 노동자 참여 노력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규정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규정	
	제8조(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절차 및 결과공표 의무 규정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행계획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사업(가족친화 직장·마을환경 조성, 가족친화 문화 확산 등) 규정	
제10조(우대)	가족여가문화 촉진을 위한 시립시설* 입장료 등 감면 규정	*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시설	
제11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7.18.기준)

본 조례 제정 시에는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제3장)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일·가족 양립 지원 등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이동하여 삭제된 상태이다. 개정 추진과정에서 ‘일·가족 양립’이 ‘일·생활 균형’으로, ‘양성평등한 사회 발전’이 ‘성평등한 사회 발전’으로 일괄 변경되지 않은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7)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정의에 따라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 1월 5일에 제정되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차례 개정되었으며, 총 2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조례는 기본계획의 수립 외에도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표Ⅲ-34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20조	제1조(목적)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 향상을	
	제2조(정의)	아동, 아동친화도시 정의	
	제3조(책무)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 적극 발굴 추진 및 시민의 노력 규정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준수할 원칙(차별 금지, 권익 최우선, 보호 지원, 여건 조성 노력, 존중 및 능력 발휘) 규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5년마다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	
	제7조(위원회의 설치)	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대체: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기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자문 사항 규정	
	제9조(실태조사)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등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결과 공표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	
	제10조(아동영향평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11조(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책사업 시행·아동친화도시 평가 이행	
제12조(아동 건강증진)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누리기 위한 추진 사업	
제13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할 사항	
제14조(아동 역량강화)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 사업	
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 시설 조성)	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노력할 사항(보행편의, 안전성 검토, 자연친화) 규정	
제16조(아동 참여위원회 등)	아동참여위원회의 역할과 참여 범위 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17조(교육 및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확산 도모	
제18조(업무의 협조)	자치구·공공기관·시책과 관련하여 법인·단체에 협조 요청	
제19조(경비 지원)	사업 수행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제20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8)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6년 3월 24일에 제정·시행하고 있다.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조례는 2년 주기로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와 차별화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Ⅲ-35】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14조	제1조(목적)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정의)	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예방센터 정의	
	제3조(적용범위)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제4조(시장의 책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조치 적극 추진 및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관련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아동학대예방계획 매년 수립·시행 의무	소관: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관계 기관(피해아동 지원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관련 사항을 협의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제8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대상 교육 실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2항
	제9조(실태조사)	2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	
	제10조(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센터 설치 고려조건, 운영 위탁 규정, 센터 업무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명시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 명시, 운영의 위탁 규정(비영리법인·단체)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실시 명시	아동복지법 23조2항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피해아동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규정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9)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와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9월 29일에 제정·시행되어 지금까지 한 차례 개정되었다. 총 3장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사업지원, 입소대상자, 비용지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Ⅲ-36】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3장 14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아동공동생활가정, 기타 용어* 정의	아동복지법 3조
	제3조(시장의 책무)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제2장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운영 주체)	그룹홈 사업 수행 요건 자격 및 수행 절차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이 수행하는 서비스 규정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대상자 자격 규정	
	제7조(비용 지원)	프로그램 운용비 또는 아동 양육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 보조 규정	
	제3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 및 그룹홈 간의 협력·연계활동 지속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9조(조직 및 구성)	센터 구성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운영·지정의 요건 규정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의 목적 및 인원(9명 이내) 구성 규정	
	제11조(운영의 위탁)	센터 운영 위탁 및 센터장과 종사자 임면 규정, *기타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비와 사업비 지원 규정		
제13조(보고 및 조사)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고 규정, 관계공무원의 서류 조사·검사 권한 규정		
제14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10)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국내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2013년 8월 1일 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양가정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범위,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III-37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총 10조	제1조(목적)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함
	제2조(정의)
	아동, 입양아동, 장애아동, 요보호아동, 입양가정, 입양기관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와 지원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
	제5조(지원대상)
	입양가정 기준 규정 단, 입양기관(아동복지법 20조)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
	제6조(지원범위)
	입양가정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 규정(입양축하금, 교육비)
	제7조(지원금의 환수)
	지원대상 부적합 시 입양축하금 등 환수 조치 규정
	제8조(홍보)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홍보 실시
	제9조(권한의 위임)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 신청을 자치구청장에게 사무 위임 가능
	제10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11)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 4일에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Ⅲ-38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총 8조	제1조(목적)	빈곤아동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아동, 아동빈곤, 빈곤아동 정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따름
	제3조(시장의 책무)	정책 수행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정책 수해 및 재원 확보 노력, 빈곤아동 차별 방지 시책 마련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법령 또는 타 조례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하고 동 조례 준용
	제5조(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교육감과의 협약 체결 가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아동빈곤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규정
	제7조(사업 추진 등)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 사업 및 의뢰, 경비 지원 규정
	제8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12)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2013년 10월 4일에 제정되었다.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 중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명시한 유일한 조례로, 총 15개조로 구성되어 있

다. 지금까지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운영에 대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Ⅰ 표Ⅲ-39 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총 15조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구성)	위원회 구성 및 자격 조건 규정
	제3조(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 규정(연도별 시행계획,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상실 선고 청구,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 선정과 지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 임기 규정, 위촉 위원 임기(2년, 2회 연임) 규정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규정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부위원장 직무 및 부재시 직무 대행자 규정
	제7조(회의 등)	회의 소집·개회·의결 기준, 의장의 표결권과 결정권
	제8조(우선 조치)	제3조의 심의 사항 중 긴급 사안에 우선적으로 필요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받도록 규정
	제9조(제척 등)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위원 심의 참여 불가
	제10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의 직급 및 직무
	제11조(의견청취 등)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절차 규정,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 협조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의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 준수, 회의참석자의 비밀누설 금지
	제13조(회의록)	간사의 회의록 작성 및 차기회의의 보고와 보관 의무
	제14조(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15조(운영세칙)	조례 규정 외에 운영 및 기타 필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후 위원장이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3. 외국인·다문화 분야

1)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관련 현황

서울시 외국인주민⁴⁶⁾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현재 413,943명(여성 221,693명, 남성 192,250명)으로, 이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343,927명(여성 178,678명, 남성 165,249명), 한국국적 취득자는 41,692명(여성 28,970명, 남성 12,722명), 국내 출생한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28,324명(여성 14,045명, 남성 14,279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4,135명(여성 50,575명, 남성 33,56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50대로서 76,515명(여성 41,102명, 남성 35,413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10대 미만과 40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20대 외국인주민의 성별 분포에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40】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2017)

(단위: 명)

구분	외국인주민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¹⁾			한국국적 취득자 ²⁾			외국인주민 자녀(국내출생) ³⁾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413,943	221,693	192,250	343,927	178,678	165,249	41,692	28,970	12,722	28,324	14,045	14,279
10대 미만	33,964	16,937	17,027	12,034	5,902	6,132	1,063	552	511	20,867	10,483	10,384
10대	21,203	11,641	9,562	12,425	7,143	5,282	1,321	702	619	7,457	3,796	3,661
20대	84,135	50,575	33,560	80,271	47,905	32,366	3,864	2,670	1,194	-	-	-
30대	76,223	38,189	38,034	67,505	31,533	35,972	8,718	6,656	2,062	-	-	-
40대	67,826	33,560	34,266	57,165	26,215	30,950	10,661	7,345	3,316	-	-	-
50대	76,515	41,102	35,413	66,831	34,501	32,330	9,684	6,601	3,083	-	-	-
60대	44,782	23,712	21,070	39,783	20,261	19,522	4,999	3,451	1,548	-	-	-
70대 이상	9,295	6,211	3,084	7,913	5,218	2,695	1,382	993	389	-	-	-

46)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2017)에 근거하여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및 국내 출생한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포함함.

- * 주 1)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2)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3) 외국인주민 자녀(국내 출생 자녀) : 0세~18세 자녀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만 집계(※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포함)
- *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시 외국인주민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우 외국국적동포인 경우가 28.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난다(기타 제외).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인 경우가 2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가 24.8%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Ⅲ-41】 서울시 외국인주민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유형(2017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외국인근로자 ¹⁾	결혼이민자 ²⁾	유학생 ³⁾	외국국적동포 ⁴⁾	기타외국인 ⁵⁾
계	343,927	70,077	32,061	44,150	92,060	105,579
구성비	100.0	20.4	9.3	12.8	26.8	30.7
여성	178,678	26,712	22,293	29,008	51,086	49,579
구성비	100.0	14.9	12.5	16.2	28.6	27.7
남성	165,249	43,365	9,768	15,142	40,974	56,000
구성비	100.0	26.2	5.9	9.2	24.8	33.9

- * 주 1)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2)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3) 유학생: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4)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5)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자
-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제외됨.
- * 출처: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체류기간별 현황을 보면, 5-10년인 경우가 22.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1년 미만(21.2%)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현황과 비교했을 때 장기 체류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Ⅲ-42 】 서울시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 분포현황(2017년)

(단위: %)

체류기간	서울시			전국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1년 미만	21.20	21.19	21.21	20.61	20.66	20.58
1년-2년 미만	16.07	15.83	16.32	17.28	16.36	17.28
2년-3년 미만	13.09	12.67	13.55	13.66	12.58	13.66
3년-4년 미만	10.16	10.48	9.81	11.79	10.91	11.79
4년-5년 미만	7.53	7.65	7.39	8.99	8.07	8.99
5년-10년 미만	22.36	22.49	22.22	19.87	22.08	19.87
10년 이상	9.52	9.63	9.41	7.72	9.25	7.72
미상	0.08	0.06	0.10	0.08	0.08	0.08

* 출처: 강희영 외(2019),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115쪽.

또한 서울시 다문화가구 가구원 현황을 살펴보면, 귀화자가 39,179명, 결혼이민자가 31,929명인 것으로 파악되며, 국내 출생한 자녀가 28,302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 표Ⅲ-43 】 서울시 다문화가구 가구원 현황(2017년)

(단위: 명)

합계(명)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소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인	외국인
179,426	48,116	71,108	31,929	39,179	30,761	2,459	28,302	29,441	15,062	14,379

* 출처: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80쪽.

서울시에서 다문화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는 구로구 17,734명, 영등포구 17,526명, 관악구 11,048명, 금천구 10,543명 순이며,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2017년 기준).

【표Ⅲ-44】 서울시 다문화가구 가구원 상위 자치구(2017년)

(단위: 명)

자치구	합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소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소계	내국인	외국인
구로구	17,734	3,003	8,704	3,032	5,672	2,402	363	2,039	3,625	912	2,713
영등포구	17,526	2,417	8,403	2,922	5,481	1,957	429	1,528	4,749	720	4,029
관악구	11,048	2,571	5,106	1,972	3,134	1,716	204	1,512	1,655	736	919
금천구	10,543	1,899	5,321	1,906	3,415	1,454	214	1,240	1,869	523	1,346

* 출처: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81쪽.

2)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추진현황

서울시의 외국인정책은 2007년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에서 출발하였으며, 2012년에는 사회통합에 기반을 둔 ‘중도입국 다문화자녀 종합지원 대책’ 및 ‘다행복 서울플랜’을 마련한 바 있다(강희영 외, 2019: 3). 이어 2014년에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격인 ‘다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는데, 1차 기본계획은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국내 체류 동포, 이주노동자를 정책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점, 인권, 문화 다양성, 참여, 역량 강화 의제로 주제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서울시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내·외국인 교류 강화, 외국인주민 자립역량 강화 지원, 문화다양성 수용 및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등 세 영역에 정책방향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표Ⅲ-45】 내·외국인 교류 강화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외국인 주민 정책참여 기구 운영 내실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2기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5.12월 출범 후 1기 위원 위촉기간(3년) 만료에 따라, 2기 신규위원 위촉 · 26개국 45명의 외국인주민으로 구성(연임 12, 신규33) · 정기회의 총 18회(전체회의 2회, 기획위원회 4회, 3개 분과회의 각 4회)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 : 1개 협의체, 3개 분과(생활안전·교육·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시의원, 경찰서, 자치구, 중국동포 등 총68명으로 구성 ※ 협의체 28명, 분과위원회 40명(분과별 13~14명) · ' 18년 분과위 개최(18개 안건) → 서울시 (결과보고) → 협의체 개최(11.2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학계·관련단체·외국인주민 대표자(1년이상 거주) 등 15명으로 구성 · 외국인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평가, 사업 등 논의(' 19.6/12월 개최)
	외국인주민 대상별 현장 밀착형 소통 및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생활살피미 - 생활불편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 19년 40명 선발중) · 서울타운미팅 - 출신국별, 체류유형별 의견수렴 및 반영(연1~2회)
외국인주민과 직접소통을 통한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	전통·문화·체육 등 교류기회 제공을 통해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의 날 행사(5월), FC서울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외국인 베틀시장(4~10월), 글로벌 문화 축제(9~10월) · 제100회 전국체전 외국인주민선수단 구성·운영 추진(10.4~10) · 외국인 자원봉사단(' 18년, 680명) 및 유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18년, 42명)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30쪽.

외국인주민 자립역량 강화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인프라 확충, 자녀성장 지원, 외국인주민 취·창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프라 확충의 경우 2019년은 추진 준비기간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취·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 대상이 적어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표Ⅲ-46】 외국인주민 자립역량 강화 지원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외국인주민지원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재구조화	서울 디디플라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건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에 내·외국민 공용 공간(공공·수익 복합시설) 및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추진('22년 하반기 완료 예정) 타당성조사 수행(6월말 완료) 후 투자심사 및 공청회 개최 예정(하반기)
	(가칭)제2글로벌센터 설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대문 인근에 고려인, 중아아시아 출신을 위한 특화된 글로벌센터 설치 설치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19. 상반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6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통합 및 재구조화 추진
외국인주민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강화 지원	아동과 양육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제공(70백만원) ② 시간제 아이돌봄(150백만원) ③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220백만원) ④ 진로·진학지원(100백만원) ⑤ 다문화가정 모국어 지원사업(신규, 54백만원)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온드림교육센터 운영(대림동, 문래동) : '18년 428명 이용 ※ 서울시(장소제공)와 현대차 정몽구재단 공동협력(운영, 재원부담) 민간단체 공모사업(90백만원) : 또래친구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등
결혼이민여성 등 외국인주민 취·창업 지원	취업중점기관 역할 강화를 통한 취업 연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중점기관 기능 재정립 및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취·창업 지원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추진 결혼이주여성 취업 디딤돌 뉴딜일자리아업 운영 확대(4명→6명)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31쪽.

문화다양성 수용 및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와 관련된 서울시 정책은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과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족 분야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교육 실시와 별도로 다문화가족 고용친화 직장문화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점이 눈에 띈다.

표Ⅲ-47 문화다양성 수용 및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2019년)

목표	내용	추진계획
문화다양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및 기반 마련	다문화 인식개선 도모를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1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일반시민 대상 외국인주민 대상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교육
	중국동포 문화교류 및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내 화합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 공모를 통해 중국동포-지역주민 간 상생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2억원)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18년 10개 대, 238명)
	외국인주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4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년 실적: 25개 모임, 486명 활동
	법무부와 MOU체결('18.12.17)로 효율적 지원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기관 고위공무원(2급이상)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3월) 비자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유치 등 협업·협력과제 발굴 및 논의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생활 기반조성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상담 및 의료, 법률 서비스 연계, 성폭력·성희롱 대응 전담팀(2명) 운영 한울타리 쉼터: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긴급보호(20명 규모, 365일 운영)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2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및 쉼터 운영 지원
	일반기업 대상 다문화가족 고용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교육실시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32쪽.

3)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황 및 분석

2008년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2008.3.21.)하고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2014.7.17.)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정책 기본계획, 지원의 범위, 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기능, 위원 관련 규정, 지원시설 설치와 운영, 센터의 설치와 운영,

지원단체 지원,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총 5차례 개정되었으며, 전체 2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Ⅲ-48】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총 26조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정의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타 법령·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주민과 동일한 혜택 규정	
	제4조(시장의 책무)	시책 추진 및 지원정책 전담 부서 설치, 인력·재정 수요 보전방안 마련 의무 규정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협의회(동조례 제8조) 심의를 거쳐 확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고 시행계획은 협의회(동조례 제8조) 심의를 거쳐 확정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기본법에 따른 기본·시행계획 내용 고려
	제7조(지원의 범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 규정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시장 소속의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인원, 자격, 임기 등 규정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심의 사항 규정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협의회 위원 결격 사유 규정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협의회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 또는 회피 신청의 경우 규정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임기 중 위원의 위촉해제 가능한 사유 규정	
	제13조(위원장)	위원장의 업무 범위 등 규정	
	제14조(회의)	협의회 개최 횟수 및 개의·의결 규정, 회의록 공개 원칙 명시	
	제1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참석하여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구성	주요 내용	비고
제16조(위원의 수당)	협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 당 지급 규정	
제17조(시책사업 추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 환경개선사업 연차적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한 규정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인력 규정(동 조례 제7조1항 관련 사업 추진)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규정(동 조례 제7조2항 관련 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지원 법 12조
제20조(업무의 위탁)	필요시 법인·단체·기관에 업무 위탁, 운영비 지원, 지도·점검 관련 규정	
제21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설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제22조(세계인의 날)	세계인의 주간 및 *세계인의 날 (5.20) 기념행사 실시 명시	*재외한국인 처우 기본법 19조
제23조(표창)	개인, 법인, 단체 표창 절차 규정	
제24조(외국인주민의 정책 참여)	정책 참여 강화를 위한 노력 및 지역 사회 봉사활동 참여 여건 조성	
제25조(권한의 위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권한 위임(자치구청장) 규정	
제26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출처: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2019.4.12.기준)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은 인권가치의 확산, 문화다양성, 성장과 공유,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강희영 외, 2019), 이에 본 조례에 기반을 둔 정책 수행 시 성별, 연령, 국적취득 여부, 체류기간 등에 따른 상이한 정책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조례 제8조에 규정된 협의회 구성시 성별에 따른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제17조와 관련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시 연령, 혼인상태, 취업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성별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 중 ‘가족’ 분야에 해당되는 아동 돌봄, 가족, 외국인·다문화 분야 정책과 해당 조례들을 살펴보았으며, 성평등한 가족 및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돌봄 분야에서는 보편적으로 돌봄받을 권리와 안정적으로 돌봄노동을 제공할 권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의 경우 ‘방과 후 보육’의 정의와 어린이집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특정 가족형태와 계층을 전제하고 있어 보편 복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돌봄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가족 분야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다. 건강가정 지원조례의 경우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 근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계획 추진과 평가, 성평등 가족가치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정의를 넘어 다양한 가족상황 또는 개인적 삶의 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직업훈련 지원 등 한부모의 자립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현재 조례에 명시된 ‘자립지원 사업’을 구체화해야 할 것과, 이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훈련 기간 동안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책 수혜대상의 제한적 적용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공되는 ‘출산축하용품’이 실제적으로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 모두를 위해 제공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출생축하용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는 대표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에서의 성별 균형 고려, 실태조사 시 성별 현황 파악 등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가족분야 정책의 경우 각 정책별 추진근거가 되는 조례가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가족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 가족형태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 조례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비단 가족 분야뿐 아니라 여성가족 분야 조례 전반에 걸쳐 성주류화 실천을 위한 성별균형 참여 보장, 성별분리통계 생산 등이 기본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일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IV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 개정방안

1.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 개정방향
2.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 개정안
3. 시정의 성평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 개정방안

1.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 개정방향

서울시의 여성가족 분야 정책은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가족생활 및 돌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수혜대상의 다수가 여성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책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주류화 추진도구들은 수혜자 통계에 기반을 두고 성별 형평성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성별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이은아, 2016).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주류화 전략의 실천은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체계와 문화를 새롭게 전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김경희 외, 2015),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고,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례 분석은 앞서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성별 구분 또는 성별 고정관념이 남아있는지, 2)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3)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지, 4) 성별 통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도출된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 정책의 성인지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의 성별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결정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성평등 추진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의 책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균등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②항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에서는 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외한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모든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항에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사항이 생략되어 있어 일괄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조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과 관련하여, 성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성별통계 작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성별통계 작성은 서울시 시장 지시사항으로도 요청된 바 있으며,⁴⁷⁾ 성별 상황과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는 성인지 통계⁴⁸⁾는 성평등정책의 수립과 평가, 성주류화 제도 추진의 핵심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특정한 가족형태 및 조건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여성의 현재적 상황과 정책 요구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 개인적 생애 경험이 경제활동 중단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 어려우며, 경제활동 촉진정책의 수혜 대상자의 자격은 현재 경제활동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경제·노동 분야에서의 성평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된 조례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일하는 여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돌봄 영역과 같이 여성 노동자가 다수로 구성된 일자리에서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처우보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를 담아내는 성평등한 가족정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의 가족 분야 조례는 총 12개로서 다양한 가족 지원,

47) “시장지시사항-914호” (* 18.01.04. 시정사업에 성인지통계 적극 반영)

48)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족·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아동보호 등을 아우르고 있다. 1인 가구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최근의 가족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가족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추진 근거로서 ‘가족지원 기본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가족 가치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에 앞서, 현재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개정방향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장에서 각 조례별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조례 개정안

1)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

(1) 성평등 실현 의지의 명료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조례인 만큼, ‘성평등’의 정의(제1조의2)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는” 것에 더하여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14조 적극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장·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조항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결과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당시 규정되었던 “서울여성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목적과 시의 책무에 맞게 “성평등백서” 발간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표IV-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p>	<p>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u>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u>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p>
<p>제14조(적극적 조치) 시장·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를 말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4조(적극적 조치) 시장·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를 말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u>이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u></p>
<p>제19조의2(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9조의2(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u>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의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u>서울여성백서</u>를 발간하여야 한다.</p>	<p>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의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u>서울성평등백서</u>를 발간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기존의 「서울특별시 여성발전 기본조례」(1999.7.31.)에 명시된 “남녀평등의 촉진”이 아니라, 현재 서울시 성평등 정책추진의 기본이 되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지향하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Ⅱ 표Ⅳ-2 Ⅱ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3.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6.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7.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8.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9.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10.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p>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성평등·가족·보육·저출생</u>,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3.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6.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7.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8.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9.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10.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u>성평등·가족·보육·저출생</u>,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성별 균형참여 보장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②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조례의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이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될 필요가 있다.



■ 표Ⅳ-3 ■ 의사결정에서의 성별 균형참여를 위한 조례 개정안

조례명	현행 법령	개정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p>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p>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u>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15조에 따른다.</u></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7. 생략</p> <p>③~④ 생략</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u>「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7. 생략</p> <p>③~④ 생략</p>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 라 운영에 관한 조례	<p>제22조(서울상상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21조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서울상상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상상나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p>	<p>제22조(서울상상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21조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서울상상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상상나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p>

조례명	현행 법령	개정안
	<p>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 가족정책실장과 출산육아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③~④ 생략</p> <p>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⑥ 생략</p>	<p>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 가족정책실장과 <u>보육담당관</u>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③~④ 생략</p> <p>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u>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⑥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⑦ 생략</p>
<p>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p>	<p>제13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공무원,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③ 생략</p>	<p>제13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공무원,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u>「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생략</p>
<p>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2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p>	<p>제12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p>

조례명	현행 법령	개정안
	<p>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및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1~4. 생략</p> <p>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및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1~4. 생략</p> <p>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조례명	현행 법령	개정안
<p>서울특별시 외국인주 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p>	<p>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4. 생략</p> <p>④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⑥ 생략</p>	<p>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4. 생략</p> <p>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u>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⑤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⑥~⑦ 생략</p>

(3) 성별 현황 파악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구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별’은 가장 기본적인 변수로 포함된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성별은 조사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됨으로써 다른 변수, 예를 들어 연령, 취업 여부, 혼인상태 등에 따른 성별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성별분리통계는 성별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모든 통계의 정보수집은 성별을 고려해서 실시하되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등의 특성에 따른 성별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 표Ⅳ-4 ▣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구축 관련 조례 개정안

조례명	현행 법령	개정안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실태조사는 <u>성별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하며, 연령, 혼인상태, 취업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특성에 따른 성별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u></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p>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p> <p>② 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p> <p>② 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u>연령, 취업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특성에 따른 성별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u></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p>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u>실태조사는 성별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하며, 연령, 혼인상태, 취업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특성에 따른 성별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u></p> <p>④~⑤ 생략</p>

2) 여성의 현재적 상황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 지원 추진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에서 전제하는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를 삭제하고 “현재 경제활동 중단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경제활동촉진사업은 2012년 제정 당시부터 포함 되어 있던 사항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타 부서 사업으로 흡수되었거나(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현재 추진되지 않는 경우(주부인턴쉽 프로그램 운영)가 있어 해당 사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주부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제2조 정의에서도 삭제될 필요가 있다.

【표Ⅳ-5】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주부인턴쉽 프로그램”이란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응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직장체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u>현재 경제활동 중단 상태에 있으면서</u>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u>삭제</u>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법령	개정안
<p>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주부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6.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 	<p>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삭제 5. 삭제 6.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생활임금 보조, 근무환경개선비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Ⅱ 표Ⅳ-6 Ⅱ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신설]</p>	<p>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3) 여성의 안전과 권익 보장 강화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피해자’ 정의는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가정구성원”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범위를 ‘핵가족’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 이에 피해자를 “여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여성 안전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요가 있다. 2차 피해의 정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법에 명시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폭력 발생요인, 유형, 폭력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변수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실태조사의 변수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표Ⅳ-7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4. 생략</p> <p>5. “피해자”라 함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여성폭력으로 부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가정구성원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4. 생략</p> <p>5. “피해자”라 함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p> <p>6.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p> <p>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p> <p>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p> <p>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p> <p>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p> <p>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p> <p>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p> <p>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p>

현행 법령	개정안
	<p>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p> <p>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p> <p>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p> <p>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p> <p>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p>
<p>제2장 지역연대의 설치·운영</p> <p>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6조(지역연대의 구성)</p> <p>제7조(지역연대의 기능)</p>	<p>제2장 서울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운영</p> <p>제5조(서울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의 설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의 서울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둔다.</p> <p>제6조(서울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의 구성)</p> <p>제7조(서울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의 기능)</p>
<p>제14조(여성폭력 실태조사)</p> <p>①~② 생략</p> <p>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발생유형·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지역연대에 보고를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p>	<p>제14조(여성폭력 실태조사)</p> <p>①~② 생략</p> <p>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국적·장애 여부·성 정체성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발생유형·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u>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u>에 보고를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p>

현행 법령	개정안
[신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성평등한 가족 및 돌봄 가치 추구

서울시 가족정책의 가족·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의 목표는 기존의 ‘일·가정 양립’에서 ‘일·생활 균형’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②항 4의 나’ 조항과 제18조의 제목이 개정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일·가족 양립’이 남아 있어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변화를 정책에 담아내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는 1인 가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 표Ⅳ-8 ▣ 성평등한 가족정책 추진 관련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u>일·생활 균형</u> 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 <u>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현행 법령	개정안
8.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 9.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 9. 그 밖에 <u>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u>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 <u>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가</u>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서울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의 경우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가족 정의를 확장할 것과, ‘1인 가구’, ‘사회적 가족’ 등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가족정책 관련 개념을 정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서울시 가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Ⅱ 표Ⅳ-9 Ⅱ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 포함)·혈연·입양 등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②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③ ‘1인 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④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신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건강가정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현행 법령	개정안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돌봄정책에서의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서울시 보육 조례」에서 ‘방과 후 보육’ 대상을 특정 가족형태에 한정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24조의 보육교사 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뿐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 실시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표Ⅳ-10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방과 후 보육”이란 <u>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u> 을 말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방과 후 보육”이란 <u>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u> 을 말한다.
제24조(교육)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과 <u>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u> 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조 목적과 관련하여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수정함으로써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의 주요 업무인 “저출생 대응계획 수립 및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과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서 정의하는 ‘보육’과 내용을 일시시킴으로써 각 조례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Ⅳ-11】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u>저출생</u>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u>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u>를 말한다.</p>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한부모가족 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 청소년한부모의 학업지원 명시, 미혼모·부 지원사업 명시에 관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표Ⅳ-12】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3. 생략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 6.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p>	<p>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3. 생략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u>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u> 6. <u>미혼모·미혼부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 사업</u> 7. <u>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u> 8.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 9.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p>

현행 법령	개정안
<p>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생략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생략 	<p>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생략 6. 한부모가족 <u>지원과 역량강화</u>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생략
<p>[신설]</p>	<p>제16조(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① 미혼모·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거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혼모·부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2. 출산비, 아이 입원 등 병원비, 생필품 구입비 등 경제적 지원 3.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 4. 미혼모·부 가족의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양육 미혼모·부의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6. 유관기관·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미혼모·부 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앞서 다른 조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가족 가치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조례 제2조3항과 제8조의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제6조의 “일·가정 양립”은 “일·생활 균형”으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은 “일·삶·쉼을 조화롭게 영위”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차등 없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둥이 행복카드’를 ‘자녀행복카드’로 변경할 것과, ‘출산축하용품’을 ‘출생축하용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Ⅳ-1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다만, 막내가 13세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5. “출산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p>6-8.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3. “<u>저출생 인식개선 정책</u>”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 4. “<u>(자녀) 행복카드</u>”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족 중 막내자녀가 13세 이하인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5. “<u>출생축하용품</u>”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p>6-8. 생략</p>
<p>제4조의2(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p> <p>③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p> <p>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p>	<p>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u>출생축하용품을</u> 지원할 수 있다.</p> <p>② 출생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p> <p>③ <u>출생축하용품</u>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p> <p>④ <u>출생축하용품</u>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u>출생축하용품</u>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u>출생축하용품을</u> 지원할 수 있다.</p> <p>1. <u>출생축하용품</u>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p>

현행 법령	개정안
<p>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p> <p>3.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 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p> <p>⑤ 시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p> <p>1.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p> <p>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p> <p>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p> <p>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p> <p>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1.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p> <p>2.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p> <p>⑧ 시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p>	<p>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p> <p>3.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 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p> <p>⑤ 시장은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p> <p>1.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p> <p>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p> <p>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p> <p>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생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p> <p>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1. 출생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p> <p>2. 출생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p> <p>⑧ 시장은 출생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p>

현행 법령	개정안
<p>제6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시민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p>1~3. 생략</p>	<p>제6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시민이 일·삶·쉼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p>1~3. 생략</p>
<p>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전과 방향 2. 추진과제와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필요한 사항 <p>③ 생략</p>	<p>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 특성에 맞는 <u>저출생</u>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저출생</u> 대응 정책의 비전과 방향 2. 추진과제와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u>저출생</u> 대응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필요한 사항 <p>③ 생략</p>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1조 목적에서 제시된 “양성평등한 사회 발전”은 “성평등한 사회”로, 제4조 시민의 책무에서 “양성평등”은 “성평등”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조 정의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은 “일·삶·쉼을 조화롭게 영위”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19년 7월에 본 조례의 ‘직장맘지원센터’ 관련 규정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옮겨지면서 제9조3, 제10조~제14조의 ‘직장맘지원센터’ 관련 규정이 삭제된 반면, 제2조5의 ‘직장맘’에 관한 정의가 남아 있어 삭제가 요구된다.

【표Ⅳ-14】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u>일과 생활의 균형</u>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u>성평등한 사회</u>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4. 생략 5.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노동자를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u>일·삶·쉽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고</u>,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u>일·삶·쉽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u>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4. 생략 5. <u>삭제</u>
<p>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u>성평등하고</u>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3. 시정의 성평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추진과 관련된 조례를 중심으로 성 불평등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가 여성 및 가족 분야 조례의 성평등한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은, 해당 분야에 여성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 집중되어 있고 이에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분야로 판단했던 데 기인한다. 그러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및 가족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책 추진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서울시 정책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운용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서울시 여성 및 가족 분야의 변화하는 정책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들이 보완, 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고유한 정책 추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 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가족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가족정책’을 수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근거가 되는 기본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반면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관련 조례 수가 많다. 이에 기존의 가족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조례를 포괄하면서 서울시의 가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관되고 효율적인 가족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성평등 분야의 경우, 서울시 성평등정책 추진 전반을 아우르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이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별도 제정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권익 분야, 성평등 노동 분야 등에서 각각의 지원대상, 추진체계, 사업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교화하여 기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여성·가족 분야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 분야뿐 아니라 인적대상사업과 관련된 다른 분야로 범위를 확장하여 관련 조례에서의 성 불평등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 그 자체를 차별 요인으로 이해하기보다 다른 변수와 결합하여 만

들어내는 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대상 설문조사>⁴⁹⁾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대상의 보기로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자영업자, 아동/청소년’ 이 제시된 것을 들 수 있다. 조사 결과 ‘근로자/자영업자’가 29.9%로 가장 높고 ‘여성’이 6.1%로 가장 낮게 나왔다면,⁵⁰⁾ 이에 근거하여 성평등정책을 가장 후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청년’, ‘노인’, ‘장애인’, ‘근로자/자영업자’, ‘아동/청소년’ 각각의 변수에는 모두 젠더 이슈가 결합되어 있으며, 여성청년,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노동자 등이 처하게 되는 성별화된 현실과 정책 요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노인정책, 장애인정책, 고용정책 등 여성과 남성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성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핵심 분야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마련된 성별영향평가 실시 과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입법예고에 앞선 사전협의 단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 적용 절차를 의무화하고, 특히 법령 ‘제정’ 시에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시정 분야의 정책 추진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9) 서울연구원(2018),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2018.7.19.) 자료집, 10쪽.

50) “민선 7기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대상” 으로 ‘근로자/자영업자’ 29.9%, ‘청년’ 26.3%, ‘아동/청소년’ 20.3%, ‘노인’ 10.7%, ‘장애인’ 6.9%, ‘여성’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강희영·양혜우·이태정·장명선·고현승·채희연(2019),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국미애·이화용(2017), 『서울시 여성의 경력단절 경로 및 영향요인 분석: 3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경희·남궁윤영·동제연·주경미·이은경(2015), 『성 주류화 기반 정책 평가제도의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도희·장임숙(2016),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적 고찰”, 『민족연구』, 제68권, 142-161쪽.
- 김선희·전영평(2008),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행정논총』, 제46권 4호, 305-330쪽.
- 김영정·김성희(2017),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진석·안현미·송이은·이충권·김아래미·김수정·정종원·최혜진·권다혜(2017),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시여성가족재단·리서치앤리서치.
- 김송이·이혜수(2018), 『맞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양육 실태와 틈새돌봄 지원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나성은·기지혜(2018), 『서울시 성인지 강화방안 마스터플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대검찰청(2018), 「2018 범죄분석」.
- 마경희(2007), “성 주류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39-67쪽.
- 박복순·박선영·송효진·선보영·강기정(2013),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박선영(2019),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방안”, 「지속가능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자료집(2019.2.22.), 국회의원 정춘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보육통계』.
- 서울연구원(2018), 『민선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2018.7.19.)』.
-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9), 『2018년 서울시 성인지통계』.
- 서울특별시의회(2019), 「285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2019.2).

신경아(2014),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그 조건과 방향”,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제88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2014.8.7.),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안현미·강희영·국미애·이선형·민연경·홍미희·이화용(201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이숙진(2017), “다양한 가족과 사회정책”, 『월간 복지동향』, 219호(2017.1.), 5-10쪽.
 이은아(2016), “성 주류화와 성평등 사회구조로의 ‘전환가능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7권 4호, 265-288쪽.
 이호선·김상희(2018),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장선희(2010), “각국의 외국인 참정권: 한국의 다문화가족 관련법제의 현황과 평가”, 『민족연구』, 제42권, 83-102쪽.
 장온정(2013), “성 주류화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비관사회정책』, 제39권, 190-234쪽.
 정재훈·김수완·김영미·최혜진·정은수·김승혜(201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한정원·장운선·김양희·허라금(2008),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Ⅰ): 수용성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대검찰청 www.spo.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서울연구원 www.si.re.kr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서울특별시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
 서울특별시의회 <http://smc.seoul.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PRISM) <http://prism.go.kr>
 외교부 www.mofa.go.kr
 행정안전부 www.mois.go.kr

Abstract

The Gender-cognitive Improvements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Ordinances for Women and Families

NA Sung-Eun

Research Fellow,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unequal factors of the ordinances for women and famili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with gender perspective and suggest the revised articles to practice the gender-cognitive policies. The targets of the analysis are 30 ordinances of Seoul metropolitan city related to gender mainstreaming, gender-equality labor, gender violence, childcare, families, and foreigners,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the gender, the balanced participation of policies, the indication of gender-cognitive statistics, and so 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needs to state the city's responsibility to implement gender mainstreaming policy clearly and reflect the revised contents of mandated gender-cognitive training for the government employees in the basic ordinance of gender equality. And the city should enhance the role to accelerate the gender-balanced participation of policies and the production of gender-cognitive statistics regardless of the policy area.

And the ordinance for gender-equality labor should extend to the definition of career-interrupted women to cover the status of repeated loss of employment in women's life cycle, even though it is revised to make a step forward in understanding women's work rather than dealing with the object of the development or the process with changing the title of vocational training center for women.

In the area of the prevention of violence related to gender, the ordinance needs to include the contents of the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 and the city's duty, such as the definition of victims, secondary damage, and the terms of secondary damage situations.

Next, the ordinances for the childcare needs not to restrict the beneficiary by eliminating such expressions as 'dual-earner family', 'lower-income family', 'family in the industrial area', and so on.

And then, it is necessary to make up for the poor contents of the ordinance of the support for the healthy family, with including the articles of the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basic plans for healthy family, the implement of the family survey, and the extension of the definition of families. In addition, the expression of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should be changed to 'the work and life balance', and 'the celebration of child delivery' to 'the celebration of birth.'

Lastly, the suggestions for the city's assignment to enhance the gender equality in the policy are as follows. The city should not hesitate to provide the rules beyond the terms of reference in the central government, to examine the current gender-unequal actions and articles remaining in the ordinances related to the civilians and propose the alternatives, and to reinforce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in the legislative proceedings of Seoul Metropolitan City.

key words: Gender Equality, Gender Mainstreaming, Gender-cognitive, Ordinance of Seoul, Gender Impact Assessment

2019 정책연구 - 03

성평등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정책 조례·지침 개선방안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나성은·기지혜
발행일 2019년 7월
인쇄처 (주)행복드림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I S B N 979-11-89763-44-2(93330)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www.seoulwomen.or.kr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